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153-10

가가호호아이들셋 
하하호호 희망한국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ontents

목차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 vii

제도개요 / xxii

제1편 연금 지급 신청 / 1

1. 신청권자	3
가. 연금수급희망자	3
나. 대리인	3
다. 관계공무원	3
2. 신청 구비 서류	5
가. 필수 제출서류	5
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5
3. 신청기관 및 기간	7
가. 신청기관	7
나. 신청기간	7
4. 신청서 작성·상담	8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서명(날인)	8
나.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9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스캐닝 입력	12
5. 접 수	13
6. 신청관련 유의사항	13





제2편 자산조사 / 15

1. 자산조사의 개요	17
가. 조사의 일반원칙	17
나. 조사의 대상 및 범위	17
다. 자료의 제출 요구	18
2. 자산조사의 종류	19
가. 신청조사	19
나.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19
다. 연간조사	20
3. 소득조사	21
가. 개 관	21
나. 소득의 종류 및 조사범위	22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25
4. 일반재산 조사	28
가. 일반재산	28
나. 재산의 종류 및 조사범위	30
다. 부 채	32
라.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36
5. 금융재산 조사	49
가. 개 관	49
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50
다. 조사방법	52
라. 금융재산 일제조사	53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 55

1. 수급자 선정	57
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57
나. 2011년도 선정기준액	57
다. 수급자 선정기준	57
2. 연금액	57
3. 연금액 감액	58
가. 감액 목적	58
나. 1인 수급	58
다. 2인 수급	59
4. 지급결정 및 통지	60
가. 지급결정	60
나. 결정통지	60
5. 연금의 지급	61
가. 연금지급 방식	61
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62
6. 미지급 연금	63
가. 지급사유 및 청구권자	63
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64
7. 수급권의 보호	65





제4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67

1. 이의신청	69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69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신청대상 처분	69
다. 이의신청 기한	69
라. 이의신청 절차	69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70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71
2. 행정심판	72
가. 행정심판의 개요	72
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72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73
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74
마. 재결에 대한 불복	74

제5편 수급자관리 /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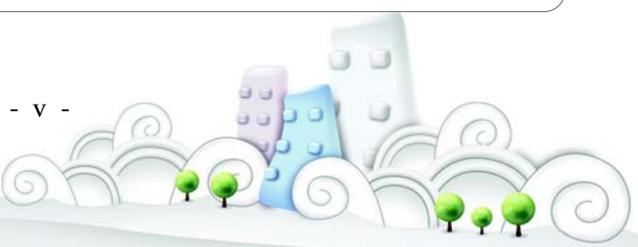
1. 수급자 사후관리	77
가. 변동사항 관리	78
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78
다.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87
2. 부당이득 환수	89
가. 부당이득 환수의 개요	90
나. 부당이득 환수 결정	90
다.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92
라. 결손처분	93
마. 소멸시효	94



3. 부당수급자 관리 95
 가. 과태료부과 95
 나. 벌 칙 97
 4.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98

제6편 개인정보보호 / 99

1. 일반규정 101
 가. 관련 법령 101
 나. 정보보호 주체 101
 다. 보호대상 정보 101
 라. 개인정보 위험 요인 101
 2.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102
 가. 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102
 나. 관리적 보안 정책 103
 다. 법·제도적 정책 104
 3.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06
 가. 배경 106
 나. 내용 106
 다.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106
 라. 모니터링 후속 조치 107





제7편 서 식 / 109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11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114
[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15
[별첨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117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118
[별지 제7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22
[별지 제8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125
[별지 제10호서식] 복지대상자 통합연명부	137
[별지 제11호서식]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138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139
[별지 제3호서식]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140
[별지 제4호서식]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141
[별지 제9호서식]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143
[별지 제11호서식]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	144
[별지 제12호서식]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45





2011년 기초노령연금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 분	2010년	2011년
제1편 연금 지급 신청		
1. 신청권자 (p.3)	가. 연금수급희망자(본인)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노령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변경 가. 연금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2. 신청 구비 서류	● 연금 지급 신청 시 「행복e음」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이 신청자의 실제 소득·재산과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최소한의 증빙서류 징구	삭제
3. 신청기관 및 기간 (p.7)	가.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연금 지급 신청, 이의신청, 지급변경신고, 미지급연금신청, 수급권 상실 신고 접수의 업무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함을 안내	가.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연금 지급 신청, 이의신청, 지급변경신고, 미지급연금신청, 수급권 상실 신고 접수의 업무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함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각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행복e음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에서 신청정보 입력(단, 신청일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실제 신청일자 입력)

구 분	2010년	2011년
4. 신청서 작성·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상담을 기초로 소득과 재산의 선정 기준 부합여부 검토 	<p>삭제</p>
4. 신청서 작성·상담 (p.8)	<p>참고 신청서 작성·상담시 필수 확인사항</p>	<p>추가</p> <p>주의 신청서 작성·상담시 필수 확인사항</p> <p>□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 상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처리
4. 신청서 작성·상담 (p.9)	<p>※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노인단독으로 변경처리.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노인부부로 처리 가능</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u>부부1인으로 변경처리</u>.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u>부부2인으로 처리 가능</u>
4. 신청서 작성·상담 (p.9)	<p>⑥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p>추가</p> <p>⑥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거주불명등록자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대리인 신청불가)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인 사람이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금융정보조회 동의서 확인 및 접수가능 (유선 등을 통한 간접확인 불가)



구 분	2010년	2011년
		<p>☞ (예외)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도피, 지병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는 미징구하고,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되 금융재산 조회는 제외</p>
4. 신청서 작성·상담 (p.10)	※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 불명등록 후 신청 가능	<p>변경</p> <p>※ 국적회복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p>
4. 신청서 작성·상담 (p.11)	2) 『행복e음』을 통하여 연금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사항 등 상담 ○ 상담 시 열람한 소득·재산 사항과 실제 신청조사를 통해 조회된 소득·재산 사항이 다를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p>삭제</p> <p>2) 연금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사항 등 상담</p>
4. 신청서 작성·상담 (p.11)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p>추가</p> <p>○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p>
제2편 자산조사		
2. 자산조사의 종류 (p.20)	<p>다. 연간조사</p> <p>○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u>연1회 이상 조사 실시</u></p>	<p>변경</p> <p>다. 연간조사</p> <p>○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u>연1회 이상 통합조사, 급여결정·관리 부서 및 읍·면·동 합동 조사 실시</u></p>

구 분	2010년	2011년
3. 소득조사 (p.21)	<p>가. 개관</p> <p>1) 소득 및 소득평가액의 의미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특성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중 중증장애인수당(13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 금액(37만원) 공제, 일용직(1년미만) 근로소득금액 차감 	<p>변경</p> <p>가. 개관</p> <p>1) 소득 및 소득 평가액의 의미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중 중증장애인수당(15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 (40만원) 공제, 일용직(1년이하) 근로 소득금액 차감
3. 소득조사 (p.21)	<p>2) 소득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조사 : 신청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전분기 3개월간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1,4,7,10월에 변동 내역 제공) 	<p>변경</p> <p>2) 소득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신고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변경된 소득 반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 퇴직사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시 세 금공제전 금액으로 산정
3. 소득조사 (p.22)	<p>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p> <p>가) 근로소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 소득 중 일용직(계약기간 1년미만)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은 그 금액만큼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차감 	<p>변경</p> <p>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p> <p>(1) 근로소득 (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 소득중 일용직(계약기간 1년이하)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은 그 금액만큼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차감



구 분	2010년	2011년
3. 소득조사 (p.24)	2)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예시) (중략) 차) 목사, 신부, 수녀 등 성직자가 은퇴후 받는 수당 / 학술원 회원수당, 이·통장수당 카)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예)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금 (서울시), 장수수당 등	삭제 2)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예시) (중략) (10)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3. 소득조사 (p.25)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37만원) ※ 노인부부로서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중에 있는 경우 65세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37만원을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미만인자는 (후략)	변경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개인별 40만원) ※ 노인부부로서 만 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활동중에 있는 경우 만65세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0만원을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 기간이 1년이하인 자는 (후략)
3. 소득조사 (p.25)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의 농림어업 및 지방세법 제197조의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변경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중략)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구 분	2010년	2011년
		-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서 신고하는 소득신고서를 징구하여 확인후 반영
3. 소득조사 (p.2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등급 구분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3만원)만큼 공제하고 소득산정	변경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5만원)만큼 공제하고 소득산정
4. 일반재산 조사 (p.30)	3) 재산가액 산정기준 (중략) ○ 임차보증금 등은 계약서상의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함.	변경 2) 재산가액 산정기준 (중략) ○ 임차보증금 등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산정하되, 주거목적의 경우에만 계약서 상의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함.
4. 일반재산 조사 (p.30)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80조제1호~3호) - 다만,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변경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변경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다만,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구 분	2010년	2011년			
<p>4. 일반재산 조사 (p.33)</p>	<p>○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p> <p>① <u>보훈처 대출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처(보훈대부채권센터)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사업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부받은 대출금과 국가보훈처의 위탁을 받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부받은 대출금은 부채로 인정 -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대부사실확인원'을 제출받아 부채로 반영 <p>② <u>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u></p>	<p>변경</p> <p>○ 금융기관 외 대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p> <p>① 공공기관 대출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p>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p>③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p>			
<p>4. 일반재산 조사 (p.34)</p>	<p>○ 임대보증금 (중략)</p> <p>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상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시 주택 등 공시가의 50%범위내에서 인정 - 전세권 설정된 임대보증금 : 공시가의 50%범위내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된 금액 - 확정일자부 임대보증금 : 공시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008년 8월 개정되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6천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부채 인정상한을 6천만원으로 조정된 것임.</p>	<p>변경</p> <p>○ 임대보증금 (중략)</p> <p>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상한 및 처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시 주택 등 공시가의 50%범위내에서 인정 <table border="1" data-bbox="911 1442 1302 1839"> <tr> <td data-bbox="911 1442 1046 1839" rowspan="2"> <p>전세권설정 임대보증금</p> </td> <td data-bbox="1046 1442 1302 1532"> <p>○ 공시가의 50% 범위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p> </td> </tr> <tr> <td data-bbox="1046 1532 1302 1839"> <p>○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설정 금액 확인</p> <p>○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p> </td> </tr> </table>	<p>전세권설정 임대보증금</p>	<p>○ 공시가의 50% 범위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p>	<p>○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설정 금액 확인</p> <p>○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p>
<p>전세권설정 임대보증금</p>	<p>○ 공시가의 50% 범위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p>				
	<p>○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설정 금액 확인</p> <p>○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p>				

구 분	2010년	2011년				
	<p>③ 처리방법 (후략)</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30%; vertical-align: top;"> <p>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의 50%내 7천5백만원까지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 세하는 경우 전전세금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준용)</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2차 임대자는 본인 임대차물건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계약금을 부채로 인정 </td> </tr> </table> <p>*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0.7.21)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7천5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이 액수를 준용하여 부채인정상한을 7천5백만원으로 조정.</p>	<p>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의 50%내 7천5백만원까지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p>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 세하는 경우 전전세금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2차 임대자는 본인 임대차물건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계약금을 부채로 인정
<p>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의 50%내 7천5백만원까지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p>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 세하는 경우 전전세금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2차 임대자는 본인 임대차물건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계약금을 부채로 인정 					
<p>4. 일반재산 조사 (p.35)</p>	<p>④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수 개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의 50%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 <u>최대 6천만원까지</u> 부채로 인정 	<p>변경</p> <p>④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수 개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의 50%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 <u>최대 7천5백만원</u>까지 부채로 인정 				



구 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물건에 동일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등기를 모두 한 경우, 주택등 공시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물건에 동일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 설정등기를 모두 한 경우, 주택등 공시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
<p>4. 일반재산 조사 (p.39)</p>	<p>나) 임차보증금 (중략)</p> <p>② 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text{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율}(0.95)$ </div>	<p>변경</p> <p>(2) 임차보증금 (중략)</p> <p>② 조사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에는 적용율(0.95)를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전액(100%) 산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율}(0.95)$ </div>
<p>4. 일반재산 조사 (p.46)</p>	<p>3) 기타(증여)재산 가) 처리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6호의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포함)한 경우에, (중략)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법원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p>변경</p> <p>3) 기타(증여)재산 가) 처리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7호의 재산을 처분(증여재산, 금융재산 감소 포함)한 경우에, (중략)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장례비, 혼례비

구 분	2010년	2011년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 상 관리방법 : 감소되기 이전 재산유형 구분없이 '일반재산-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관리 - 산정가액 : 처분한 재산의 개별 재산가액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p>4. 일반재산 조사 (p.46)</p>	<p>3) 기타(증여)재산 가) 처리원칙</p>	<p>추가</p> <p>3) 기타(증여)재산 가) 처리원칙</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년간 본인재산으로 산정하며,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p>4. 일반재산 조사 (p.47)</p>	<p>(2) 본인소비분 확인</p> <p>①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액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등에 사용된 금액 <p>*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p>	<p>변경</p> <p>(2) 산정방법</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소비분 확인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장례식,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p>*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세금영수증은 불인정)</p>



구 분	2010년	2011년
4. 일반재산 조사 (p.47)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을 신청자의 재산에서 산정 제외	변경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 중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금융)에 포함하여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
4. 일반재산 조사 (p.48)	(3)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과 개월수를 반영한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 월인정액 : 노인단독 100만원, 노인부부 160만원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변경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기초노령연금 감액대상자의 경우도 자연적 소비금액 적용 산정 * 자연적 소비금액(월인정액) :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20%(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계산)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시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5. 금융재산 조사 (p.49)	2) 적용기준 ○ 명의인 처리기준 - 자녀 또는 노인의 (중략)	추가 2) 적용기준 ○ 명의인 처리기준 - 자녀 또는 타인이 (중략) - 다만,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구 분	2010년	2011년
<p>5. 금융재산 조사 (p.53)</p>	<p>2)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조회 결과는 당초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조회 결과의 효력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금융재산 해지 유인 최소화 - 단, 금융재산 감소가 타 재산 증가 또는 부채상환의 경우는 6개월전이라도 변경가능 • 이 경우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2차 금융조회를 실시 ※ 재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전 월의 말일 기준으로 금융재산 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을 (중략) 차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 감소와 (중략)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략) 감액처리 ○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 (중여)재산 산정방식에 따라 처리 	<p>변경</p> <p>2)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 (중여)재산 산정방식에 따라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을 (중략) 차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재산 감소와 (중략)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략) 감액처리
<p>5. 금융재산 조사 (p.53)</p>	<p>라. 금융재산 일제조사</p> <p>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50%이상인 수급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 매년 2차례 실시 <p>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수급자</p>	<p>변경</p> <p>라. 금융재산 일제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금융재산 일제조사 실시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50%이상인 수급자

구 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 : 매년 1차례 실시 다) 가)와 나)를 제외한 전 수급자 ○ 주기 :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연 1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25%이상~50% 미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 이상 ~ 70% 미만 ※ 시군구에서 별도로 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은 주기에 관계없이 포함하여 조회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수급자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p>5. 연금의 지급 (p.62)</p>	<p>가. 연금지급 방식 (중략)</p> <p>2) 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 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 예외①)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 예외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u>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u> 수급자의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p>추가</p> <p>가. 연금지급 방식 (중략)</p> <p>2) 지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 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 (예외①)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 (예외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구 분	2010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채무불이행자 •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채무불이행자 •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수급자 또는 (예외②)의 계좌로 입금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예외②)의 계좌로 지급 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
제4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p>1. 이의신청 (p.70)</p>	<p>다. 이의신청 절차 (중략)</p> <p>2) 이의신청서 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은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u>시·군·구의 사업팀으로</u> 즉시 송부 <p>3)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u>기초노령연금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u> 심사를 하게 하고, 심사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함 	<p>변경</p> <p>라. 이의신청 절차 (중략)</p> <p>3) 이의신청서 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을 접수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 공단은 이의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u>시·군·구로</u> 즉시 송부 <p>4) 심사·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후, 심사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함

구 분	2010년	2011년
제5편 수급자 관리		
<p>1. 수급자 사후 관리 (p.86)</p>	<p>(4) 연금의 일시정지에 따른 업무 처리</p> <p>○ 처리절차</p> <p>①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또는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후 사실 확인</p> <p>※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u>출국일 그 다음날</u></p>	<p>추가</p> <p>(3) 연금의 일시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중략)</p> <p>○ 처리절차 (중략)</p> <p>③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자</p> <p>- 본인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또는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p> <p>(중략)</p> <p>※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단, 해외체류 중(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신청일부터 기산</p>
<p>2. 부당이득 환수 (p.91)</p>	<p>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p> <p>(1) 환수금액 (중략)</p> <p>※ 부당이득 환수 시 유의사항</p> <p>-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p> <p>- 주소지가 동일한 부부수급자 중 한명만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처리 가능</p>	<p>변경</p> <p>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p> <p>(1) 환수금액 (중략)</p> <p>○ 부당이득 환수 시 유의사항</p> <p>-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p> <p>- 부부수급자 중 한명만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처리 가능</p>

제도개요

1. 기초노령연금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신청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신청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11년 노인단독 740,000원, 노인부부 1,184,000원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합산 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소득환산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 가액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 대도시(1억8백만원), 중소도시(6천8백만원), 농어촌(5천8백만원), 금융재산(가구당2천만원) -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관계없이 연 5%
	기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5세이상 노인

구 분		내 용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차등지급('11.1~'11.3 적용기준)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미만	66만원이상 ~68만원미만	68만원이상 ~70만원미만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2.4만원미만	112.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6.4만원미만	116.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연금액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미만	106.4만원이상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연금액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 '11.4월 변경되는 연금액은 추후 통보							

2. 업무처리절차

가. 개괄

구 분	①통합조사 요청	② 읍·면·동 조사 후 사업팀 이송	③즉시 처리	④사례관리	⑤시·군·구 접수
대상 사업	- 기초생활보장(시설입소 포함) - 기초노령연금 - 보육 : 보육료, 양육수당 - 장애인복지 :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 장애인연금***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자활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 - 장애아동재활치료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 - 아동인지능력향상 - 장애인활동보조 - 산모신생아도우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노인일자리사업 - 아동급식 - (일반수급자)시설입소 신청 등	- 장애인등록 - 각종발급업무 -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차량표지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 각종 감면 등	- 중점보호대상자 사례관리 ※ 읍면동 상담 후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서비스연계팀으로 바로 인계 또는 ② 소득재산조사가 필요한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조사 후 서비스연계팀으로 분배	- 긴급복지지원 - 입양아동지원 - 청소년특별지원* 등
신청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읍·면·동 상담, 대상선정	시·군·구 접수
	↓	↓	↓	↓	↓
	시·군·구 요청		즉시처리	시·군·구 요청	
조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읍·면·동 건보료 등 소득재산 확인, 욕구조사 등		서비스연계팀 ·소득·재산 조사 ·근로능력 판정(기초)	사업팀 자격확인
	↓	↓		↓	↓
	통합조사관리팀	시·군·구 요청		서비스연계팀	사업팀
보장결정	사업팀 결정, 통지	사업팀 결정, 통지		서비스연계팀 서비스계획	사업팀 결정, 통지
	↓	↓		↓	↓
급여서비스	사업팀 급여 지급	사업팀 서비스 제공		서비스연계팀 서비스 제공	사업팀 급여서비스 제공
	↓	↓		↓	↓
변동관리	통합조사관리팀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기초생활)	읍·면·동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서비스연계팀 서비스 점검	통합조사 관리팀**/사업팀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		↓	↓
보장중지	사업팀 급여 중지	사업팀 서비스 중지		서비스연계팀 종결처리	사업팀 급여중지

*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요청의뢰 후 자격판단

** 긴급복지지원사업 : 사업팀에서 지원 후 통합조사관리팀에 적정성판단을 위한 자산조사 요청

*** 장애인연금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장애등급 심사 실시 대상자 조회 및 장애등급 심사를 읍·면·동에서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심사 의뢰하여 실시

나. 세부 업무처리 절차

1) 신규 신청자

(1) 신청(읍·면·동)

-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
 - (신청서) 신청서의 ‘안내 및 유의사항’을 먼저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정보 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
 - 상담과정에서 확인된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신청인 서명을 하여 제출하도록 함
 - (소득·재산신고서) 소득·재산 항목 중 공적자료가 자동반영 되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토지, 건축물, 선박, 입목재산, 항공기, 어업권, 금융재산, 금융부채, 회원권 등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제출 서류 안내
- 신청서 등록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 정보시스템에 등록 즉시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2) 조사(통합조사관리팀)

-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 공적자료 조회요청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구성원,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 조회요청(금융재산 조회요청 포함)
-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해 추가로 제출받을 서류가 있는 경우 민원인이 읍·면·동 방문 제출하도록 함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등을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

(3) 보장결정 및 결과 통지(사업팀)

- 보장결정 후 수급자에게 결정내용 통지
-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반영하여 보장결정

(4) 이의신청

- 이의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 관련 이의신청은 통합조사팀에서 처리하고 보장결정 및 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팀에서 수행

2)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1) 공적자료 변동사항 알림(시스템)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정보,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소득재산 변동사항 : 매월 초 알림

* 거주지 변동사항, 가구원 변동사항 : 매일 알림

(2)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 소득·재산 변동

- 공적 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예 :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당일 미반영 시 당월급여는 전월기준으로 생성됨

* 변동처리 후 해당 월 급여변동사항의 상계소급절차를 진행해야만 익월급여 변동가능

(3) 급여지급자료 생성(정보시스템)

- 급여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매월 15일 24:00시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

(4) 급여액 확정 및 지급의뢰(사업팀)

- 급여담당자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생성된 급여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급여 확정처리 후 전자결재
- 결재된 급여 지급자료(PDF파일)를 연계된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하여 회계부서로 지급의뢰

(5) 급여이체 및 급여지급(회계부서)

-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급여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급여 입금
- ※ 매월 급여지급 시 계좌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3) 기존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1)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통합조사관리팀)

- 공적자료에 의한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의해 자동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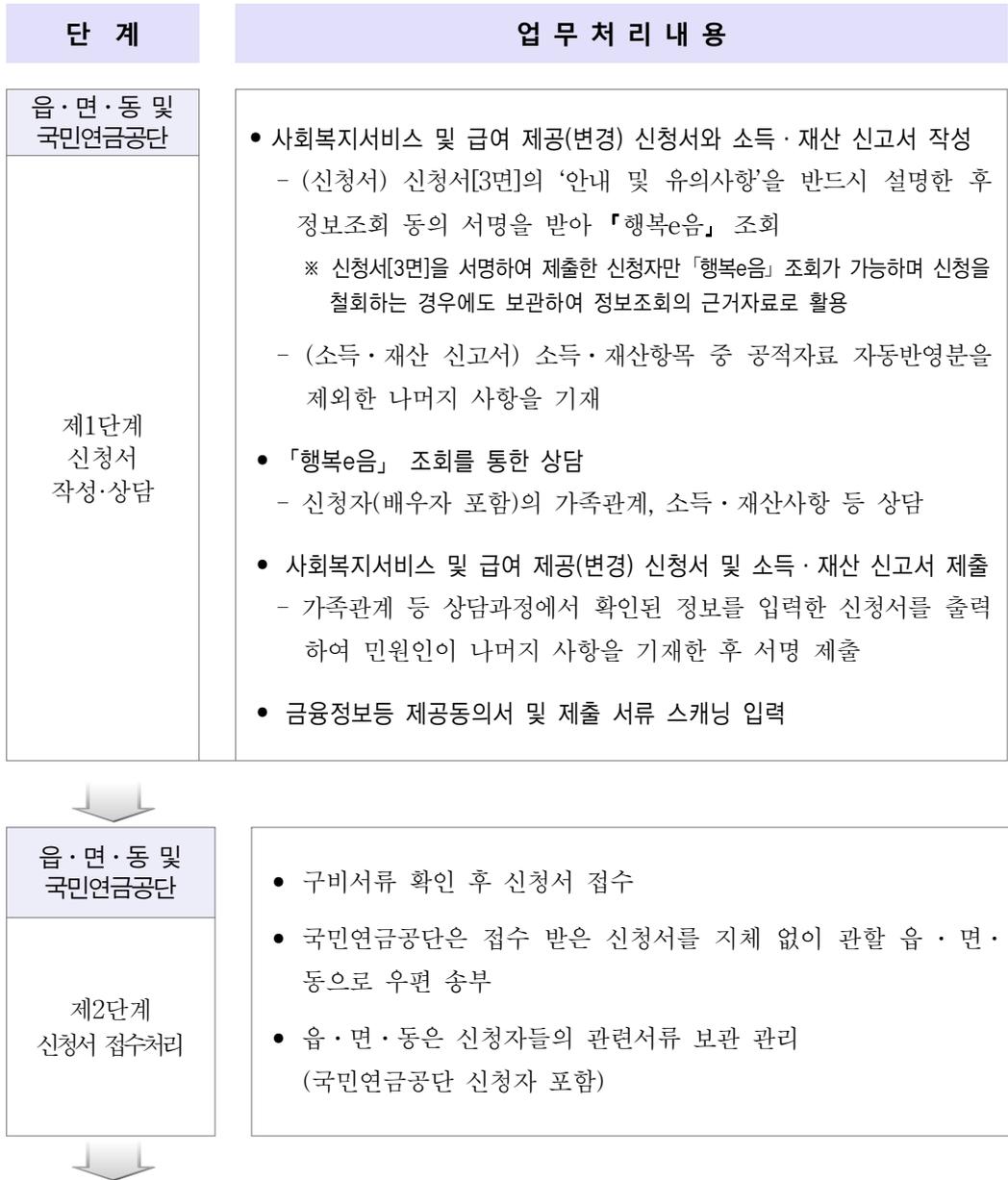
(2) 보장중지 요청(통합조사관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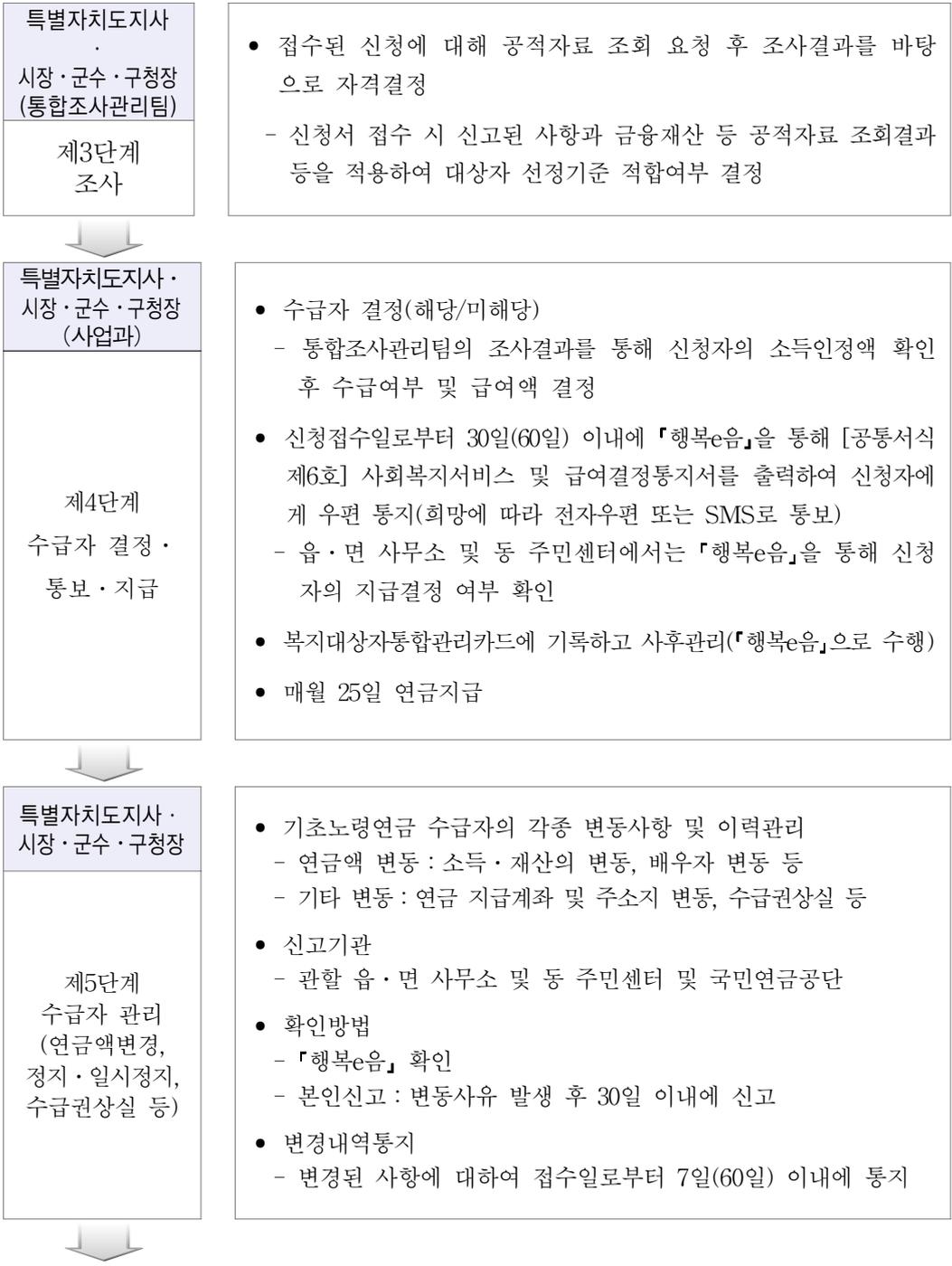
-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정보시스템)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팀에 보장 중지 요청

(3) 보장중지 및 결정(사업팀)

(4) 보장비용 징수(사업팀/회계부서)

다. 본인 신청시 : 기초노령연금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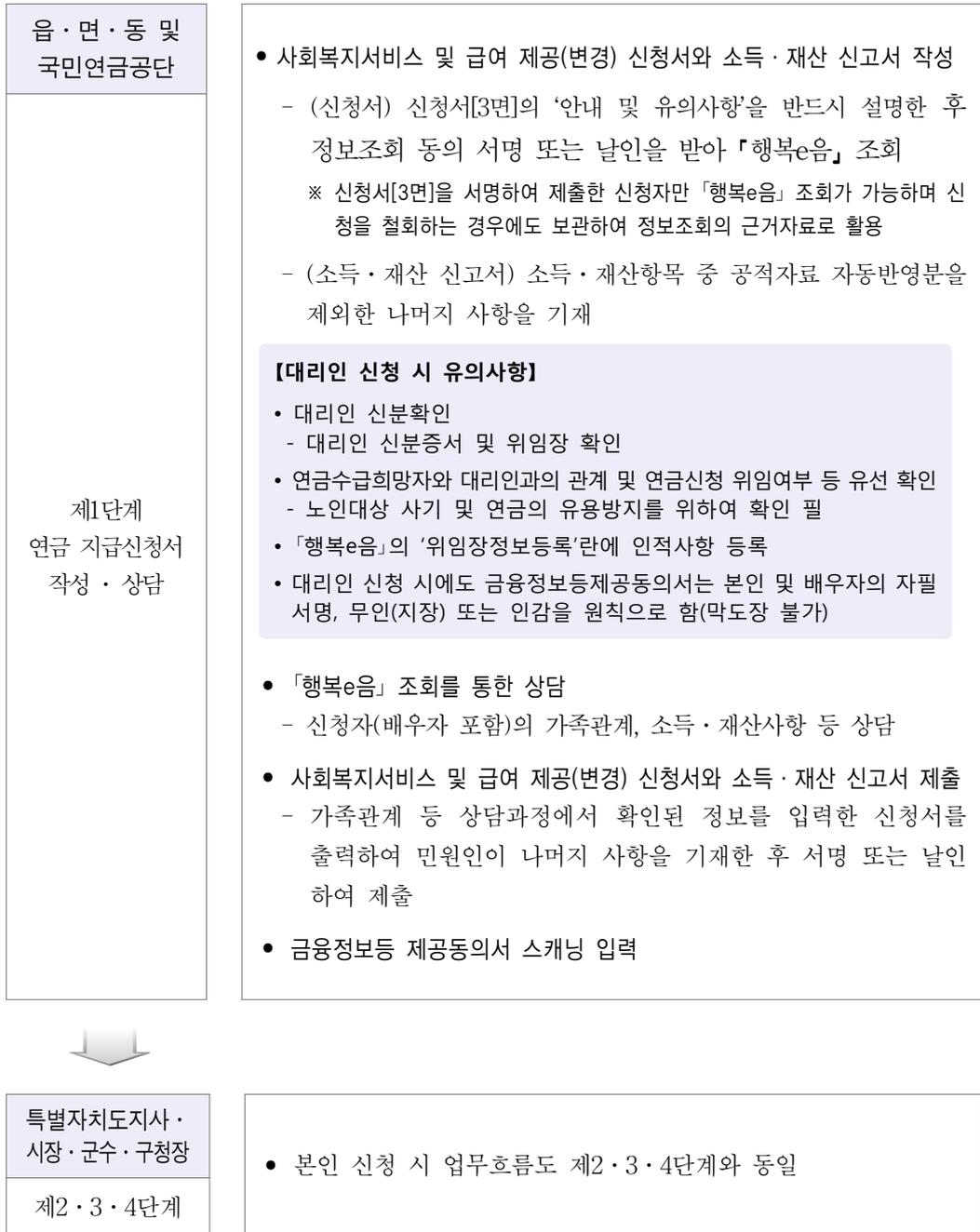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의 여부를 판단하여 부당이득 징수기준 해당여부 검토 후 절차 이행 ● 부당이득 환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확인 → 납부통지 → 납부독촉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행위여부 확인 → 의견진술 기회부여 → 과태료부과 통지 → 압류 → 경매처분 → 징수금액처리 → 종결
제6단계 부당이득환수 부정수급관리	

※ 이의신청은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것으로 제4, 5, 6단계에서 제기할 수 있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 자격인정, 그 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제4, 5, 6단계) ● 기 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신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
이의신청	

라. 대리인 신청 시 : 기초노령연금 업무 흐름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제5·6단계 수급자 관리

- 본인 신청 시 업무흐름도 제5·6단계와 동일
다만, 구비서류(각종 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서) 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의신청

- 대 상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밖에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대리인 (제4, 5, 6단계)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서
- 기 한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 유의사항 : 대리인 신청·신고 시 본인에게 유선으로 대리인과의 관계 및 위임 여부 등 반드시 확인

연금 지급 신청

제 1 편



1. 신청권자
2. 신청 구비 서류
3. 신청기관 및 기간
4. 신청서 작성·상담
5. 접 수
6. 신청관련 유의사항



1 신청권자

가. 연금수급희망자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자

나. 대리인

- 배우자(만65세 미만 포함)
 -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신분증 확인은 부부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로써 신청하러 온 배우자의 신분증만 확인하여 신청접수
-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¹⁾ 등 : 대리인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자가 기초노령연금위임장 [서식 제3호]를 통해 위임한 사람은 모두 가능
- 외국인 : 여권 등으로 신분을 확인

다. 관계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홀로 사는 노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대신 신청 가능
 - 관계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도 구비서류(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는 모두 징구

1) 사회복지시설장 : 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

 주의 **대리 신청·접수 업무 처리요령**

□ **대리 신청·접수 시 주의사항**

- 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신청관련 위임여부(위임사실, 신청서 등 자필서명) 등을 유선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연금 신청등과 관련하여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금신청·접수 불가
※ 자녀 등이 입원, 출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노인 본인 모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대리 신청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주의 **의사무능력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업무 처리요령**

□ **의사무능력자 신청·접수**

- 의사무능력 노인은 신청서, 동의서, 위임장 등의 직접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대리신청 절차에 따라 처리

가. **해당요건**

- (원칙) 치매, 중풍, 뇌병변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거나,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예외) 집에서 장기요양하여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기록 또는 읍·면·동장 및 담당자가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확인방법, 일시, 확인자 등)하여 처리

나. **대리 신청**

- 의사무능력자의 연금 지급신청은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범위 및 순위는 ①배우자·부모·자녀 ②형제·자매 ③직권신청(담당공무원)으로 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금 지급 신청서(의사무능력자의 서명 불필요),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서, 진단서,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금융 재산의 내역만 입력
 - 신청자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 등으로 확인



2 신청 구비 서류

가. 필수 제출서류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 및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각1부
 - ※ 신청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또는 대리인을 통해 연금 신청·접수 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는 노인 본인의 자필서명(또는 무인(지장)·도장 날인) 필수
-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공통서식 제1호의3] 1부
 - ※ 부부노인 중 한명(만65세미만 배우자 포함)이 신청을 거부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3) 신청자 신분증서 사본(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 단, 신분증이 없는 신청자가 병원입원 또는 거동 불가능으로 신분증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 건강보험증으로 대체 가능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시 제공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신분증 대체 가능
-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나.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서류

- 1) 소득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2) 재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3) 부채 : 임대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각 1부
 -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에 의해 금융재산 조회 시 금융·신용정보 등 부채사항 일괄 확인
 -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증빙서류는 열람동의를 얻어 확인

 주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작성요령**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각자의 자필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날인 필수(막도장 불가)
 - 부득이한 경우 1장씩도 가능
- 인감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등록된 인감을 말하며,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가급적 본인 자필서명이나 무인(지장)을 찍도록 유도
 -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유효기간
 - 1) 신규신청자의 경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 2) 기존수급자의 경우 : 수급자 책정 이후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징구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시 까지 계속 사용 가능

□ **주의사항**

- 신청자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희망 시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방법**

(방법①) **각각의 주소지에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장에 부부 모두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인감도장)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장에 본인만의 서명 또는 날인(무인, 인감도장)하여 각각 제출 (이 경우, 상대 배우자의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신청대기에서 신청완료로 변경되어 다음 절차로 이행되므로 되도록이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1장에 부부 모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유도)

(방법②)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에 부부 모두 제출한 경우**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및 신청관련 사항을 일방 배우자의 주소지에서 「행복e음」에 입력하면 신청 및 동의서 제출유무가 타 주소지에서 확인되므로 별도의 조치 불필요
 - ※ 단, 「행복e음」을 통해 신청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신청서와 대조 확인 필요

□ **해외출국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방법**

- 해외로 출국한지 180일 이하의 신청자에 한해 외국에서 해외특송우편(FEDEX, DHL 등)으로 신청서와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가 첨부되고(본인자필서명, 무인, 인감날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동의와 위임여부를 확인(유선확인 등 필)하였다면 무방



3 신청기관 및 기간

가.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
 - 국민연금공단지사는 연금 지급신청, 이의신청, 지급변경신고, 미지급연금신청,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의 업무 지원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송부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수급대상자를 결정하여 통지함을 안내
 -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서류를 송부받은 각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확인한 후 「행복e음」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에서 신청 정보 입력
(단, 신청일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실제 신청일자 입력)

나. 신청기간

- (만65세 이상인 자) 연중 신청·접수 가능
- (사전신청)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2개월 전부터 그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접수 가능
 -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도래월부터 지급

4 신청서 작성·상담

- 신청서 작성 및 「행복e음」 조회를 통하여 상담
-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증빙서류 확인 및 스캔 입력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작성·서명(날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및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 작성
 - 본인·배우자 사항과 소득·재산항목 및 추가입력 사항 작성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제1호의2]의 소득·재산·부채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도 제출
 - 연금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공적자료 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 [공통서식 제1호] 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에 대해 반드시 안내할 것
 - * 변동사항 신고의무,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및 부당이득환수, 정보조회 및 정보보유기간 등 안내
 - 신청서에 신청자·배우자(위임장에 대리인)를 확인한 신분증서를 기록

주의 신청서 작성·상담 시 필수 확인사항

□ 신규신청과 변경신청의 구분

- 타 복지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만65세가 되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행복e음」상 신규신청이 아닌 변경신청으로 처리

□ 사실(이)혼 관계 확인

- 사실(이)혼 관계 확인은 수급자 결정(선정기준액, 연금액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청서 작성 시 '※ 배우자 관계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 이혼)란'에 반드시 체크
- 신청 당시 진술한 배우자 관계에 대하여 6개월 이후 변경신고 가능

□ 연금수급희망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및 지급신청 위임여부 등 반드시 유선확인

- 대리인 신분증서 및 위임장 확인
- 노인대상 사기 및 연금의 유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필수



나.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상담

1) 신청자격 확인

- 연금수급희망자의 연령 : 만65세 이상
- 본인·배우자의 거주여건 등 확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제3면]를 작성한 신청자에 대해서만 정보조회 가능

신청자격이 있는 자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 이상인 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 ②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자
 - 생일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1월생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우 변경신고를 통해 사후관리
- ③ 사실상 혼인·이혼관계에 있는 자
 - 개인사정 등으로 (이)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이)혼 상태인자에 대해 사실확인²⁾하여 사실혼 관계의 자를 노인부부로 적용하고,
 - 법률상 배우자에 대하여는 노인 단독가구로 적용
- ④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³⁾에 있는 만65세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간 신청자격을 인정하여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권을 인정하여 외국국적 배우자에게도 연금지급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여도 국적취득을 안 하는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 수급권을 상실처리하고, 내국인 배우자는 부부1인으로 변경처리. 단,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화허가 통지 전까지는 부부2인으로 처리
- ⑤ 주민등록법 및 해외이주법상 국외(해외)이주 신고 후 주민등록말소 처리가 되지 않은 만65세 이상의 자
 - ※ 주민등록상 '신고일(이주일)'이 아닌 '말소일'임에 유의
- ⑥ 거주불명등록을 한 자
 -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거주불명등록자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대리인 신청불가)
 -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인 사람이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직접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의 금융정보조회 동의서 확인 및 접수가능(유선 등을 통한 간접확인 불가)
 - ☞ (예외) 거주불명등록자인 배우자가 도피,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의 금융정보동의서는 미징구하고,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되 금융재산 조회는 제외

신청자격이 없는 자

- ① 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경과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후 1개월 경과자로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첨부)
- ② 실종자⁴⁾: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 ③ 해외체류 180일 이상인 자
- ④ 국적상실자⁵⁾
 - ※ 국적회복⁶⁾ 및 주민등록 재등록 후 신청 가능
- ⑤ 주민등록말소자
 - ※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 신청 가능
- ⑥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자
 -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시민권자로서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 신청 불가능
 - ※ 국적회복·취득하여 주민등록 생성·재등록 된 경우는 신청가능

- 2) 사실확인 : 본인 및 배우자 모두가 혼인(이혼) 상태를 동의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자녀, 이·통·반장과의 유선통화를 통해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드시 상담내역에 기록관리
- 3) 혼인신고서 및 동거 확인 후 상담내역에 기록 관리
- 4) 실종신고 : 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이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로써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동안 계속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선고(민법제27조)
 -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민법제28조)이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반증이 있더라도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 사망한 것으로 취급됨(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
- 5) 국적상실 : 외국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6월내 외국국적 미포기, 국적선택불이행
- 6) 국적회복 :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국적회복허가서(또는 호적등·초본)와 외국국적포기확인서(또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참고 | 외국인 등록(출입국 관리법 제31조)**

-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부여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5>

2) 연금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 사항 등 상담

3) 연금 지급 계좌 신청(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8조)

- 연금 지급을 위한 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 가능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 한정재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 단, 금융기관, 우편관서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직접 지급
- 신청 시 제4호 서식의 대리수령신청서와 다음 서류를 제출받음
 - 수급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서, 건강보험증 등)
 - 예외적인 경우의 확인서류(예외적인 경우 확인방법 참고)
 -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의 신분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 등)

- 신청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리로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유, 연금의 사용목적 및 타 용도 사용금지 등 안내
 - “기초노령연금 신청대상자는 ○○○ 어르신이나, 당사자의 희망에 의하여 ○○○ 어르신께서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님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에 입금되는 본 급여는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위해서만 사용하셔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 **예외적인 경우 확인방법**

- ① 한정치산 또는 금지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의 한정치산 또는 금지산 선고 결정문 또는 후견인 선임이 명기되어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시·구청 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담당에게 확인 가능)
 - 압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건 이상을 제출받음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금융 압류 사실 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기타 상기에 준하는 입증자료로서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치매, 중풍, 뇌병변 병원진단서를 제출받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출받아 확인
 -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로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는 입소통지서 및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제출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스캐닝 입력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공통서식 제1호의3] 및 스캐닝 입력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별첨서식)를 제출받아 「행복e음」에 통보요구서 제출 여부 입력
 - ※ 금융정보등 제공사실을 통보받기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성 불필요



5 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접수
 -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최종 결정됨을 신청자에게 안내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접수 받은 때에는 「행복e음」 입력 후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송부

6 신청관련 유의사항

- 거짓, 허위 등의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행복e음」 조회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부당이득환수 및 과태료부과 등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성실신고 유도
 - 「행복e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 가구원, 주소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반영되어 조치됨을 안내
- 신청 시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등 포함) 자료 조회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신청서 [제3면]의 ‘안내 및 유의사항’ 반드시 안내)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주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 조회 및 제공시 유의사항

- 신청서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어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결정 등의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자 산 조 사 제 2 편



1. 자산조사의 개요
2. 자산조사의 종류
3. 소득조사
4. 일반재산 조사
5. 금융재산 조사



1 자산조사의 개요

가. 조사의 일반원칙

- 1) 『행복e음』을 활용한 소득·재산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소득·재산자료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행복e음』으로 통보된 기존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한 경우만 수급권자에게 (변동사항에 대한 입증자료 징구 등을 통하여) 확인 후 반영
- 2) 금융정보 등 조회를 통한 금융재산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신용정보, 보험정보 포함)의 조회 결과를 일괄 반영

나. 조사의 대상 및 범위

- 1) 신청자(수급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을 말하며, 가구 단위로 조사
 -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을 포함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2) 가출·행방불명·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때라고 할지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포함하여 조사
 - 금융정보 등 조회는 제외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미징구,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집행유예자는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징구

3)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 포함 여부

-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신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가구 단위의 자산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임

4) 일방 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소득·재산 포함 여부

- 신청인이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연금액은 노인 단독 기준 적용

※ 사실상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5)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 대상 포함 여부

-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 등으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다. 자료의 제출 요구

- 「행복e음」 조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행복e음」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참고 | 조사 및 자료징구의 근거(기초노령연금법)

-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금을 신청한 자, 수급권자, 수급자,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법 제7조제1항)
- 수급권자, 수급자가 관련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연금지급의 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음(법 제7조제4항)
-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답변을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법 제23조제1항)



2 자산조사의 종류

가. 신청조사

- 1) 조사목적 : 연금수급희망자, 그 배우자 및 대리인 등의 연금지급 신청에 대해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조사
- 2)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조사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 조사시기 : 신청서 접수 시 즉시 조사 개시
 - 조사방법 : 「행복e음」 조회 및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등 조회
 -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나.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 1) 조사목적 :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자료에 의해 실시하는 조사
- 2) 조사대상 및 방법 등
 - 조사대상 및 내용 :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구 분	조사내용	세 부 내 용
소 득	소득액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 월급여액 변동, 취업·퇴사·이직 등 • 사업소득 : 사업소득액 변동, 사업자등록·휴폐업 등 • 재산소득 : 이자·임대소득 발생 및 변동 등 • 기타소득 : 공적연금 급여액 변동 등
재 산	재산액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재산 증감, 재산가액 변동 등
배우자 유무	연금액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재소, 집행유예, 행방불명, 실종, 가출, 해외 장기체류 등
관리 행정동	행정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입
급여관리	계 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변경

- 조사시기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통보되어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조사
- 조사결과 처리 : 수급자격 여부 및 연금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

다. 연간조사

-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통합조사, 급여결정·관리부서 및 읍·면·동 합동 조사 실시
- 연간조사계획의 내용(예시)
 - 조사의 기본방향
 - 소득인정액 산출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범위
 - 수급자 등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및 주기(시설수급자 포함)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조사내용, 확인조사 절차 및 일정
 -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
 - 본인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입금 수급자 등
 - 그 밖에 수급자의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구의 소득·재산 등
 - 전출입자의 임차보증금 등 자산변동 사항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 및 소득평가액의 의미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중증장애인수당(15만원)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상시근로소득금액(40만원)공제, 일용직(1년이하)근로소득금액 차감

- ‘실제소득’에 포함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 기타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공적이전 소득

2) 소득 산정기준

- (상시근로소득)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신고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변경된 소득 반영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 상실확인서(근로복지공단)
 - * 퇴직사실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나 월급명세서에 의한 소득산정 시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산정

나. 소득의 종류 및 조사범위

- 국세청 등 공적기관의 소득 자료 및 본인 신고소득 위주로 파악(추정소득은 제외)
-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소득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일용근로자 소득은 제외
- 노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을 통한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정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수당 및 지원금,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인 간 부조형식의 급여 등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1)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

- 노인의 근로활동 장려 및 한시적, 임시적 일자리로 「행복e음」상 조회되어도 확인을 통하여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
 - ※ 민간기관의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자체로부터 수행기관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므로, 우선 이를 확인한 후 제외
-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된 소득 중 일용직(계약기간 1년이하)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은 그 금액만큼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차감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⁷⁾,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⁸⁾,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⁹⁾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7)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8)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9)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 임업소득 : 영림업(營林業)·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연금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 산재급여 발생 원천이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임시·일용직에 따른 산재급여(휴업급여)인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종 급여(보훈연금)¹⁰⁾
 - ※ 다만, 상기법률에 의한 수당 중 다음의 수당은 소득에서 제외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와 제16조의2에 의한 생활조정수당¹¹⁾, 간호수당¹²⁾, 무공영예수당¹³⁾
 - ③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10)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포함

11) 생활조정수당은 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생활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독립유공자 및 유족, 기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12) 간호수당은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중상이자(1~2급)를 간병·보호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제외

13)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수호의 공헌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금전적 수단을 사용

2) 소득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예시)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아동청소년사업안내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 노동부 직업훈련수당
- (2)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3) 홍익회 원호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 생활원호 및 복지원호 자격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철도청 직원으로, 철도 업무 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자로서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한 자’, ‘근무 중 사망으로 순직으로 인정된 자의 유가족’
- (4) 재한(在韓) 원폭피해자가 받는 수당
 - 성격상 ‘생활안정’보다는 생활필수적인 수당인 ‘의료비’에 가까움
- (5) 진폐위로금
 - 산업재해보상법 상해급여는 소득으로 산정하고, 진폐증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금이므로 산정에서 제외
- (6)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보유단체의 전승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 (7)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조례에 의한 ‘이주민특별일자리사업’에서 받는 급여, ‘고령자 세대에 대한 지원금’
- (8)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북한 이탈주민, 일군위안부 등에 대한 지원금
- (9) 희귀난치성질환자 간병비 지원금
- (10) 지자체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 (1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다. 소득 유형별 산정방법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개인별 40만원)
 - ※ 노인부부로서 만65세 미만의 배우자가 근로 활동 중에 있는 경우 만65세 미만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도 40만원을 공제
- 일용근로소득 공제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하인 자는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된 일용직근로소득 금액만큼 공제 후 반영¹⁴⁾
 - * 소득·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 신청·접수 당시 제출한 신고서
 -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공제는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 소득 산정 시 수급권자의 소득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2)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 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조합에서 신고하는 소득신고서를 징구하여 확인 후 반영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 휴·폐업 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나, 필요시 서류(휴·폐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14) 「행복e음」상의 상시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소득자료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소득이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조회됨
- 따라서, 상시근로소득에 포함된 계약기간 1년이하의 일용근로소득을 확인하여 공제하고자 하는 것

- 자녀 등이 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노인의 사업소득으로 산정 하되, 만약 구제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명의변경)를 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징구하여 수정·반영
- 개인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가 동시에 조회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 적용
 - ※ 법인 사업자는 근로소득 적용

3)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건물·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소득 파악

(2) 이자소득

- 「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3) 연금소득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은행법, 보험업법등에 의한 개인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연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

4) 공적이전소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자동 반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보상금** : 연금급여의 월 수령액을 소득으로 산정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은 등급 구분 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중 기초수급자로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수당(15만원)만큼 공제하고 소득산정**



○ 유의사항

- 연금을 담보로 연금지급기관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월 연금액에서 대출 상환금이 공제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제 전(前)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행복e음」에서 공제 전 금액으로 조회됨)
- 반환일시금 등 일시금적 성격의 보상급여는 조사 시 전환되는 재산 형태에 따라 재산으로 산정

4 일반재산 조사

가. 일반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말하며, 만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재산도 조사대상에 포함됨
- 노인 명의의 재산이나, 실제 자녀 소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
- 공동명의 재산은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소유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균분하여 처리

1)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 (\text{일반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text{기본재산액} - \text{부채}) \times \text{재산의 소득환산율} \div 12\text{월}$$

※ 재산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5로 하며, 재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환산율 적용¹⁵⁾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합산금액이며, 금융재산은 별도의 공제금액(2,000만원)을 공제하여 산정함에 유의

○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재산의 소득환산에서 제외

구분	공제액(만원)
대도시	10,800
중소도시	6,800
농어촌	5,800

15) 재산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경우 쉽게 자산 구성이나 자동차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행태로 인해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생활유지능력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될 수 있음.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노인가구의 자산구성을 중립적인 상태에 두고 전체 재산가액 규모를 보게 되므로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이 가능

- 수급자가 보유한 재산(일반재산,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등)의 합산금액에서 물건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신청자(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부부의 경우 상위도시 거주자 기준,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를 기준으로 공제금액 차감

※ 지역구분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예시 | 기본재산(주거공제)액 적용사례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가정)

□ 사례 1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홍길동, 경기도 A군에 시가표준액 8천만원 주택 소유
⇒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 8천만원 - **1억8백만원** = 0(음의 값은 '0')
* 물건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억8백만원
- 주민등록상 **경기도 B시** 거주 홍길순, 임차보증금 1억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 - **6천8백만원**) × 5% ÷ 12개월 = 133천원
*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6천8백만원
- 주민등록상 **충남 C군** 시설 거주 홍길순, 서울시에 시가표준액 1억5천 아파트 소유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5천만원 - **5천8백만원**) × 5% ÷ 12개월 = 383천원
*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5천8백만원

□ 사례 2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홍길동(남편), 경기도 A군에 시가표준액 2억 주택 소유 부인 홍길순은 강원도 B군 아들집에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2억 - **1억8백만원**) × 5% ÷ 12개월 = 383천원
* 물건 소유자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억8백만원

□ 사례 3

-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시가표준액 1억 아파트 소유 및 거주 홍길동(남편), 부인 홍길순은 경북 B군에 시가표준액 1억2천 아파트 소유 및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2억2천만원 - **1억8백만원**) × 5% ÷ 12개월 = 466천원
* 물건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1억8백만원
- 주민등록상 **강원도 A시** 시가표준액 1억 아파트 소유 및 거주 홍길동(남편), 부인 홍길순은 경기도 B군에 시가표준액 5천 아파트 소유 및 거주
⇒ 재산의 소득환산 금액 : (1억5천만원 - **6천8백만원**) × 5% ÷ 12개월 = 341천원
* 물건 소유자 및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위도시 거주자 주소지 기준으로 공제금액은 6천8백만원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의 종류별로 산정기준이 다르나 토지, 건물, 주택, 입목재산, 각종 회원권, 어업권의 경우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함
- 임차보증금 등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산정하되, 주거목적의 경우에만 계약서상의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금융재산은 종류에 따라 평균잔액, 해약 시 환급금, 액면가액, 최종시세가액 등으로 함
-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는 별도 산정기준으로 함

참고 | 시가표준액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으로, 토지 및 주택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으로 하고, 그 외의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 1일 결정 고시하는 가액

나. 재산의 종류 및 조사범위

1) 일반재산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제3호)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¹⁶⁾를 받아 고유번호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¹⁷⁾

16)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17) 공부(등기부등본)상 명의를 기준으로 함. 즉 종중·마을·단체 등 명의를 아닌 경우 노인 본인 재산으로 산정

- 종중재산으로 등기할 수 없는 농지(전·답·과수원)에 한하여 '합유*등기'인정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하며,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함

* 합유자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체에 미치고,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함. 또한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며,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 **선박,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7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¹⁸⁾(소득세법 제89조2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추진¹⁹⁾시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²⁰⁾ 인가에 의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²¹⁾를 말하며,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취득한 경우도 포함
 - 조합원입주권에는 기존건물의 평가액 + 납부 청산금 + 웃돈(승계조합원의 경우)이 포함되어 있어 이미 주택비용을 다 지불한 권리로서, 주택이 완공되면(완공일 기준) 다시 주택으로 전환됨
- **분양권**
 - 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제외함
 - 청약통장에 의한 당첨,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으로부터 남는 물량을 분양받아 취득한 권리로서 조합원 아닌 자가 갖게 되는 권리
 - 주택비용이 다 지불되지 않은 권리(계약금과 중도금 등만 지급)로서 주택 완공으로 잔금을 청산하게 되면 주택으로 전환
- **입목재산, 어업권**(지방세법 제6조제11호, 제13호)

- 공동소유형태 중 ‘공유’인 경우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18)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증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등도 입주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증서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입주권과는 성격이 다름
- 19)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절차 : 구역지정 →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조합원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조합원 분양 및 동·호수 추첨, 일반분양 → 착공 → 준공검사, 입주 → 이진고시, 권리확정 및 등기 → 청산
- 20) 관리처분계획 : 종전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형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21)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 :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말함

2)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참고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상군경(제4호), 공상군경(제6호), 4.19혁명부상자(제11호), 공상공무원(제14호), 국가사회발전재단특별공로 상이자(제16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장애등급 무관)

참고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지적장애인, 7. 자폐성장애인,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15. 간질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지자체 조례에 따라 비과세 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 예**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으로 조례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차량

다. 부 채

- 1) 원칙 : 부채의 용도에 관계없이 차감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채(사적 금전대차 계약에 의한 개인 간 부채)는 차감대상에서 제외²²⁾
- 2) 유형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금융기관의 대출금, 임대보증금

22) 소득인정액을 낮추기 위해 허위로 사채를 설정하는 등 고의적·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3) 부채 산정방식

○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의 종류(주택담보대출²³, 주택연금²⁴, 신용대출 등) 및 용도(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의료비 등)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
- 금융정보 등 조회 시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금액 확인

○ 금융기관 외 대출금(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채)

① 공공기관 대출금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등

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

-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③ 법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

-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채는 그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 채권·채무자간 분쟁해결을 법원에 신청하여 화해 또는 조정(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에 의하여 작성된 조서에 의하여 부채내용 확인
- ※ 단, 추후 채무 상황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토록 안내

예시 |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보증보험 대출금 및 공사 대출금

□ 보증보험 대출금

○○보증보험 기관의 대출증명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보증 목적으로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출증명서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이중 계상되므로 부채로 인정되지 않음

23) 근저당 내지 질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대출금액만 부채로 인정

24) 일명 ‘역모기지’라고 하며,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생활 및 주거안정을 평생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공적보증에 의한 ‘중신지급과 중신거주’를 특징으로 함(2007년 7월 12일부터 판매)

- 주택연금 누적액은 재산 담보부 금융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부채(금융기관용자금)로 처리
- 주택가액(공시가격)에서 대출금(연금액+보증료+이자+수수료)을 제외한 잔액을 소득으로 환산

(예) 시가 1억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63만원씩 1년째 받고 있는 경우
 ⇒ 주택연금액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지급받는 연금액을 부채로 차감하고 잔존 가치액만을 재산으로 산정
【1억-995만원(대출잔액)】 × 5% / 12월 = 39만원
 ※ 대출잔액 = 주택연금 수령액 + 수수료 + 보증료가 포함된 값임
 ※ 주택연금액은 부채로 차감되므로 주택연금가입자가 유리

○ 임대보증금

- ①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 및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해 입증방법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부채로 차감
-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인정 상한 및 처리방법
 - 원칙 :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 시 주택 등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

전세권설정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 ○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설정금액 확인 ○ 「행복e음」에서 조회되는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에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가의 50% 범위 내에서 7천5백만원까지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징구하여 임대보증금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 계약 후 확정일자를 추후에 받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적용 ○ 주택 등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일부를 재임대 또는 전전세하는 경우 전전세금(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주택 소유자는 공시가의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 2차 임대자는 본인 임차물건의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50% 범위 내 7천5백만원까지 계약금을 부채로 인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2010.7.21)으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범위가 최대 7천5백만원 :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이 액수를 준용하여 부채 인정상한을 7천5백만원으로 조정

예시				
구 분	주택 시가	공시가격	임대보증금	부채인정액
전세권등기	2.5억	1.6억	1.4억	8천만원
확정일자	2.5억	1.6억	1.4억	7천5백만원



주의 대한주택공사 임대사업 관련 임대보증금 산정 방법

□ 처리 원칙 :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보증금 처리 원칙 준용

- 공시가의 50%한도 내에서 최고 7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 ※ 월 임대료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예1) A가 공시가 1억5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 준 경우
⇒ A의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 (예2) A가 공시가 1억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5천만원) 준 경우
⇒ A의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④ 유의사항

- 다가구 주택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이 수 개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의 50%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합계 최대 7천5백만원까지 부채로 인정
 - 단일 물건에 동일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모두 한 경우, 주택등 공시가격의 50% 한도 내에서 등기된 금액을 부채로 인정

4)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부채사항 상담·조사 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전세권 설정 확인
- 2007년 10월 15일 이후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간에 체결한 전세권 설정 등기, 임대차계약서는 효력 불인정
 - *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차용금액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이자가 있는 경우 소득에서 이자를 차감하지 않음
 - 예** 금융기관 대출금이 5천만원이 있어, 매월 20만원을 이자로 상환하는 경우 20만원은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등기 된 물건은 부채가 아니므로, 제외하지 않음
 -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부채가 아님에 유의



주의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처리방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양도한 경우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 간 금전대차에 대한 변제를 강제·구속하고자 하는 사문서로 부채가 아니며, 동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주의 | 주택 매각 후 임대보증금 처리 방법

□ 주택을 매각하여 변경신고(재신청) 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세입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액 소비분으로 인정하여 그 금액만큼은 기타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음

라.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1) 일반재산

(1) 토지, 건축물 및 주택

① 정의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건물(지방세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²⁵⁾ :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② 가액산정방법

- 토지(전답, 임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행복e음』조회시점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²⁶⁾ 법률상 소유자의 재산으로 산정
 - 다만, 미등기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되,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주의 상속 개시 후 상속 미등기 재산 산정방안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등기관행·상속협의 지연 등으로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

- 일차적으로는 납세의무자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하되,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상속지분이 유동적이므로, 신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① 상속등기를 완료 후 본인 등기내용에 따라 산정
 - ② 사실상의 소유자(사용수익자)가 본인이 아님을 신고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 ③ 민법상 지분*대로 산정

* 민법상 상속지분(법정 상속분) 계산 방법
 상속재산 1억, 상속인이 배우자·자녀 3명인 경우 법정지분이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이므로, 상속재산 1억을 지분합계(4.5)로 나누어 해당 지분만큼 계산

25)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

26) 『행복e음』에 구축된 재산자료는 시·군·구 과세자료로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 토지 등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기준 : 과세기준일인 6월1일까지 토지 등을 매매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당해년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에 매매한 때에는 매도인(중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부과됨



주의 재산을 사용·수익 처분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산 산정 방법

□ 소유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통선 내 토지, 가족묘지 토지, 시설녹지, 저수지에 잠긴 전·답 등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행복e음」 상에 조회되는 재산가액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인 건물과 부속토지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



주의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재산가액 산정

□ 토지 등 지가가 공시되지 않았거나, 무허가 또는 비과세인 경우 시·군·구의 세무부서 과표 담당을 통해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하여 가액산정

- 무허가 건축물이 비과세 대상으로 가액을 산정함에 유의

- 시장·군수가 아직 가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시 산출된 평가액 또는 분양가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공시지가 등과의 가액 차이로 해당·미해당 등의 결정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의 의견수렴 후 분양가로 적용

(2) 임차보증금

①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②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율(0.95)을 곱하여 산정,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전액(100%) 산정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율}^{27)}(0.95)$$

- 임대차계약서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약서는 무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함에 유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예**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나, 임차인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본을 신청인(신 임대인)이 제출한 경우
- 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권리의 승계가 확실하다면, 즉 세입자가 신 임대인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의한 임대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인정 가능

주의 전세계약서 임차인 명의를 자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처리방법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직계존비속(그 배우자)으로 변경 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재산으로 산정 처리(p.46)

27) 적용율 설정취지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율을 곱하여 5%를 공제
- 「행복e음」에 계약서상의 전월세보증금을 입력시, 적용율은 소득인정액 산정할 때 자동 반영



주의 '무료임대'(자녀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처리방법

- ①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 G4C(행정정보공공이용)를 통해 자녀명의 주택의 등기부등본 확인 또는 개별 징구
- ② 자녀 명의 임차주택에 거주 :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서 징구
- ③ 기타 무료임대주택에 거주 : 상담과 전화 등을 통해 확인하여 상담내역에 기록한 후 처리하되, 별도 무료임대확인서는 징구하지 않음
 -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무료임대를 관련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 ※ 추후 사실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과 다른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성실 신고 유도



주의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전세계약서 제출 시 처리방법

- 감소분에 대하여 매매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처에 대해 소명토록 하고, 본인 소비분과 자연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은 본인재산으로 산정



주의 대한주택공사 임대사업 관련 임대차보증금 산정 방법

- 처리 방향
 - (임대보증금) 공시가의 50%한도 내에서 최고 7천5백만원 범위 내에서 부채로 인정
 - (임차보증금)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대한주택공사와 입주자간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징구
 - ※ 월 임대료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인의 임대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예1) A는 공시가 1억5천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7천만원)를 주고, 주택공사와 계약(전세금의 5%)한 B가 입주한 경우
 - ⇒ A의 임대보증금은 7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B의 임차보증금은 (350*0.95)만원으로 산정
 - (예2) A는 공시가 1억 아파트를 주택공사에게 전세(5천만원)를 주고, 주택공사와 계약(전세금의 20%)한 B가 입주한 경우
 - ⇒ A의 임대보증금은 5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B의 임차보증금은 (1,000*0.95)만원으로 산정



주의 유료 및 실비시설입소자 입소보증금 처리방안

- 임차보증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재산으로 산정하고, 보증금 제공자가 자녀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의 출처를 따지지 않고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산정함
 - 다만, 퇴소 시 감액지급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가액산정은 퇴소 시 반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③ 유의사항

- 월세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 미납으로 임차보증금에서 차감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미납금을 차감하는 경우 개인 간 부채를 인정하는 결과이므로, 임차계약서상 당초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산정
-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 양도 시 부채상환금으로 불인정
 - 변제(양도)전이면 임차보증금으로 산정(부채로 산정하지 않음에 유의)
 - 변제(양도)후이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예시 |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적용예시

□ 변제(양도) 전

-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년 전 5천만원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 임차기간 만료 시(2010년 8월 1일) 임차보증금을 B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 ⇒ 신청조사일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하지 않아 B(채권자)에게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 5천만원은 임차보증금으로 산정

□ 변제(양도)후

-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년 전 5천만원 차용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 임차기간 만료 시(2008년 9월 8일) 임차보증금을 B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 ⇒ 신청조사일 현재,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B(채권자)에게 임차보증금이었던 5천만원을 돌려줬다 하더라도, 사인 간 금전대차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타재산'으로 산정함

(3) 선박·항공기

- ①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의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²⁸⁾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 \cdot \text{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4) 입목재산

- ① 정의 : 지상의 과수, 입목,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5) 회원권

- ①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 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28)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20.3%이므로 시가의 70%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6) 조합원입주권

①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제출서류 : 분양회사 또는 재건축조합 등과 작성한 계약서 사본,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분양가액 확인서 등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²⁹⁾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자료 등 확인 가능한 공적자료를 징구하여 확인



주의 주택청약당첨권(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신청인이 해당 주택당첨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 사업 완공으로 주택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등기부등본 확인
 - 주택청약 당첨 물건지와 등기부등본 상 물건 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주택분양권 자료는 삭제하고, 전환된 주택 재산 확인·반영
- 주택분양권을 처분한 경우 : 매매 또는 증여 관련 증빙자료 징구

29)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국세인 소득세법에서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반면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로 달리 해석되고 있음

(7) 분양권

①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 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8) 어업권

① 정의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등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조류채취업

②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어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 표준액을 반영

2) 자동차

(1)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2) 조사방법

- 국토해양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³⁰⁾ 정보를 반영

30)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조회결과 적용

- 재산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전수 표기되었으므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상담 시 소유 여부를 확인(자동차등록원부,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행복e음」에서 수정 반영
- 자동차 분실·도난 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만 재산에서 제외 가능
-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지분이 있는 경우 지분대로, 지분이 없는 경우는 균등배분하여 산정

주의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관련

□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하는 자동차 유형

- 모든 국가유공자 차량이 아니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
 -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장애인 소유 차량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장애인 등록 여부는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
-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비과세되는 차량은 전부 재산 산정에서 제외
(예)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소유한 차량

□ 구체적 적용례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장애등급 1~3급인 아들(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과 노인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인 경우
- ②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 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재산에 포함하는 경우>

- ① 자식과 공동소유하는 차량 : 균분하여 처리
- ② 차량 2대 소유 중 1대가 장애인 차량인 경우
 - 장애인 차량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에 포함

□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 처리기준

- 최초 등록한 차량을 산정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 노인 부부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제외

3) 기타(증여)재산

(1) 처리 원칙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제7호의 재산을 처분(증여재산, 금융재산 감소 포함)한 경우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구분하여 본인재산으로 산정

* 타재산증가분 : 타재산 구입, 부채상환금

** 본인소비분 : 의료비, 교육비, 위자료 지급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처분, 재산처분에 다른 세금 납부금, 장례비, 혼례비

기타(증여)재산 가액 = 처분한 재산 가액 - (타재산 증가분 + 본인소비분 + 자연적 소비금액)

- 「행복e음」상 관리방법 : 감소되기 이전 재산유형 구분없이 '일반재산 -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관리
- 산정가액: 처분한 재산의 개별 재산 가액 산정원칙에 따라 산정
- 2007년 10월 15일 이후 매각되거나 감소된 재산(증여 포함)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관리
 - * 2007년 10월 14일 이전 매각되거나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매각대금 및 차액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을 하지 않음
 - 노인 본인의 자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관리
-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년간 본인재산으로 산정하며,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산정
 - 공익, 자선 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
- 미해당 통지를 받았던 자가 재산 감소를 이유로 재신청하거나 기존 수급자가 재산 감소를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산정처리



(2) 산정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재산의 유형을 확인하여 재산으로 산정
 - * 주택을 매각하여 전세계약 체결 →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
- 부채를 상환한 경우 : 부채 상환 금액만큼 감소 처리
 - * 부채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로 산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
- 노인부부의 경우 자연감소분 산정 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한 달까지는 부부 기준으로 적용하고, 사망한 다음 달부터 노인단독기준으로 적용

○ 본인소비분 확인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사용액 확인
 - 진료비, 약제비(한약포함),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구입, 장례비, 혼례식 등에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진료(약제)비 납입확인서와 납입영수증, 장례식장(화장장 등) 및 혼례식장 영수증 등(간이 세금영수증은 불인정)
- ②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사용액 확인
 - 학원비, 등록금 등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을 위해 사용된 금액
 - * 증빙서류 : 학원비영수증, 등록금납입영수증 등
- ③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확인
 - 이혼 시 본인의 재산을 감소시켜 위자료로 지급한 경우, 위자료 지급금을 차감(단, 재산 분할 청구로 인해 소득·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불인정)
 - *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이체내역서 등
- ④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처분 재산** 확인
 -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된 경우, 해당 재산 순위별 금액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재산(금융)에 포함하여 신청자의 재산으로 산정**

⑤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 확인

-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금(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확인하여 그 금액만큼 차감

* 증빙서류 : 납세증명서, 세금 납부 영수증

○ 자연적 소비금액 확인

-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을 처분(증여, 매각, 감소 등)한 시점부터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 적용

* 기초노령연금 감액대상자의 경우도 자연적 소비금액 적용 산정

*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³¹⁾의 120%

(단독가구는 3인가구, 부부가구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계산)

* 자연적 소비금액 등 반영 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출된 금액이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

예시 | 공매 및 공탁

□ 공매

- 세금 체납자 A씨, 주택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체납세금 처리 후 8백만원을 돌려받음
⇒ 기 산정되어 있던 주택재산을 삭제처리하고, 환급금 8백만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유형별 재산 항목에 기재

□ 공탁

-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A의 전 재산(공시가 1억 아파트)을 법원에 공탁함
⇒ 공탁한 사실만으로는 소비분으로 인정 불가능하며, 출금한 경우만 인정

31) 2011년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65호, 2010.8.31)

구분	3인가구	4인가구
금액(원/월)	1,173,121원	1,439,413원



5 금융재산 조사

가. 개 관

-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노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부채 포함)을 말하며, 만65세 미만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금융재산 등도 포함됨
- 연금 수급자 결정시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반영한 후 최종 결정 통보

1) 조사대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과 부채

2) 적용기준

- 명의인 처리기준

- 자녀 또는 타인이 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및 노인 명의의 계좌를 자녀 소유 및 명의 도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명의인 기준으로 판단
 - 단,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판결받은 경우는 제외
 - ※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손자가 미성년이라 하여 노인 본인 이름으로 예금한 경우도 예금주명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³²⁾를 받아 고유번호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3) 소득환산방법 : 금융재산 총액을 연리 5%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

예시 |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 인정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노인의 재산에서 제외
 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계좌·도명계좌임을 판결받은 경우
 2.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3.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32)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나.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1) 금융재산

(1) 금융재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3개월 이내 평균잔액³³⁾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불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
 - 주식 등의 평가액은 증권계좌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나타남
 -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연금 개시 전 잔액

참고 | 비상장주식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 제1항)

- 보험증권 : 해약 시 환급금
 -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등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약 시 환급금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계좌(해약환급금)는 산정하지 않음
 - 계약자와 수익자(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계약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
 - *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면 계약자에게 납입금이 환급됨

33) 평균잔액 계산방법 : 매일의 잔액합계를 해당일수로 나누면 평균잔액이 산출됨

- 가령, 4월 중 예금 평균잔액 계산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일의 잔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일수인 30일로 나누면 4월의 평균잔액이 됨



- 만기생존축하금, 질병발병보상금 등은 별도 재산으로 파악하지 않으나, 금융 재산이나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재산 형태에 따라 산정

○ 연금보험 : 연금지급 개시 전 해약환급금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3)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 **일상생활 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자금 성격의 경비를** 재산산정에서 제외, 그 나머지 금액을 재산으로 산정

- 배우자의 유무 및 수급과 관계없이 '가구' 기준으로 2,000만원 일괄 공제

2) 금융부채(신용정보) :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 부채 인정 시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연대보증인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불인정

구분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부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 약관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의 대출(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약관대출금) 모두 포함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 대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이상 연체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부채 불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대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대출')* ○ 저당권이나 질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설정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이 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 수시입출금 계좌 중 대출이 가능한 계좌에 의하여 이루어짐. 또한,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대출수요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설·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평균잔액 산정 시 일정부분 (-) 금액이 반영되는 점 감안하여 대출로 불인정

* 또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부채잔액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여 제외

* 다만, 일반대출을 받아 한도대출을 변제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금융부채로 반영

3) 유의사항

- 요구불예금 계좌를 타 계좌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중복 조회된 경우³⁴⁾에는 중복 부분은 재산산정에서 제외
 - 각 계좌에서 동일 금액의 입출금 사실을 확인하고, 각 계좌의 잔액의 합을 재산으로 산정(중복 계산된 금액 차감)
-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노인 → 자녀)시 '기타(증여)재산' 항목에 산정

다. 조사방법

- 신청에 따른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대로 일괄 적용
- 금융조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조회기준일의 잔액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처리

1) 금융정보 등 조회에 의한 조사

- 조회기준일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전 월의 말일
- 조회기준 금액 및 산정범위
 - 계좌별 기준으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는 산정하지 않음
 - 조회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계좌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유지 및 노후생활 필수 자금 성격의 경비(노인단독과 노인부부가구 구분없이 가구당 2,000만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조회절차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에서 『행복e음』에 등록
 - 보건복지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행복e음』을 통해 금융조회 결과 확인

34) 요구불예금은 평균잔액으로 산정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중복 산정 문제 발생 가능



2)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 적용

- 「행복e음」으로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인정액 산정
- 금융재산이 감소된 경우 기타(증여)재산 산정방식에 따라 처리
- 금융재산을 인출하여 주택 등 일반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때에는 금융재산에서 중복분 차감 처리
 - 금융재산 감소와 일반재산 취득 사실이 일련의 과정으로 확인된 경우³⁵⁾에만 적용
 - 금융과 일반재산이 중복 산정된 경우 주택 등 구입으로 금융재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금융재산 감액 처리

라. 금융재산 일제조사

- 금융재산 비중이 높거나 소득인정액이 많은 수급자에 대한 정기적 금융조사 실시
- 정기적 금융조사를 통해 수급 적격 여부 및 연금액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
- 의식불명 등 의사무능력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등 징구 없이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적격여부를 최종확인

-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수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매년 금융재산 일제조사 실시
 -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50% 이상인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수급자

35) 통장 입출 내역, 주택 구입가액, 등기부등본 일자 및 권리 변동관계 확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제 3 편



1. 수급자 선정
2. 연금액
3. 연금액 감액
4. 지급결정 및 통지
5. 연금의 지급
6. 미지급 연금
7. 수급권의 보호



1 수급자 선정

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2011년도 선정기준액

(단위 : 원/월)

구 분	노인단독 ³⁶⁾	노인부부 ³⁷⁾
선정기준액	740,000	1,184,000

다. 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2 연금액

-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A값 : 국민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액수
- 연금액 적용기간은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로, 2010년 4월 ~ 2011년 3월까지 연금액은 90,000원(부부 144,000원),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 연금액은 91,000원(부부 145,600원) 추정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 A값 및 연금액 추계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A값(만원)	179	182	187	192	198
연금액(만원)	9.0	9.1	9.4	9.7	9.9

※ 2011년은 이후 A값 및 연금액 추계는 변동 가능

36) 노인단독 : 신청인이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37) 노인부부 : 신청인이 만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배우자(배우자의 연령은 무관)가 있는 경우

3 연금액 감액

가. 감액 목적

-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금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함(법 제5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 (부부감액) 노인단독과 노인부부의 생활비 차이를 인정하여 부부가 동시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함(법 제5조제2항)

나. 1인 수급

1)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노령연금액] > 선정기준액

2) 내 용

- 소득인정액과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액은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1)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66만원미만	66만원이상 ~68만원미만	68만원이상 ~70만원미만	70만원이상 ~72만원미만	72만원이상 ~7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4~'12.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2)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2.4만원미만	112.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6.4만원미만	116.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2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4~'12.3월	91,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다. 2인 수급

1) 부부감액

○ 내 용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 20% 감액 하여 지급

○ 산정방식

- 연금 지급액 = (노인단독 연금지급액 × 80%) × 2

2)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에 따른 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40,000원 단위로 절상하여 지급

3) 노인 부부가구 2인 수급

소득인정액	106.4만원미만	106.4만원이상 ~110.4만원미만	110.4만원이상 ~114.4만원미만	114.4만원이상 ~118.4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12만원 초과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4만원 초과 ~8만원 이하	0원 이상 ~4만원 이하
연금액	'11.1~'11.3월	144,000원	120,000원	80,000원
	'11.4~'12.3월	145,600원	120,000원	80,000원

※ 2011년 4월 ~ 2012년 3월까지의 연금액은 2011년 3월에 확정, 별도 통보 예정

예시 | 기초노령연금 감액 지급 방법

- ① 노인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690천원 : 선정기준액 차액이 5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60천원
- ② 노인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소득인정액 1,104천원 : 선정기준액 차액이 8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80천원
- ③ 노인 부부가구 중 2인 수급
 - 소득인정액 1,054천원 : 선정기준액 차액이 130천원이므로 연금액은 144천원 전액 수령

제3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 지급

4 지급결정 및 통지

가. 지급결정

1) 연금지급 여부 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에서 「행복e음」을 통해 조사하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해당 또는 미해당)

※ 연금지급 결정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미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미해당자로 결정

- 연금지급 결정일 및 결정내용 등을 「행복e음」에 기재
 -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통합서식 제7호] 및 ‘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통합서식 제8호(을-3)] 생성(‘복지대상자통합관리카드’ 출력 가능)

2) 연금액 결정

- 노인단독 : 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
- 노인부부 : 전액지급 또는 감액지급 결정

나. 결정통지

1) 통지방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연금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접수일, 지급여부 결정일, 결정내용, 지급예정 연금액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통합서식 제6호]를 신청인에게 통지(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명기)

※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세지서비스(SMS) 또는 전자우편(e-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 가능

※ 신청인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발송전에 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필로 신청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2) 통지기한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



5 연금의 지급

가. 연금지급 방식

1) 연금지급 기준

- 연금지급시점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사전신청의 경우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 이후에 연금지급 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
- 연금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단, 무연고 독거노인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여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노인 부부가구가 1인 수급에서 2인 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급자로 결정된 배우자의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부부가구에 2인 수급 연금액 지급

주의 | 수급권 포기

- 수급자가 수급권 포기를 희망할 경우 수급권포기서(임의서식)를 제출받아 수급권 상실처리 후 수급권을 포기한 그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주의 | 주민등록말소자

- 주민등록말소자(허위신고자, 이중등록자)의 경우 말소일이 속한 달에 수급권상실 처리하되, 연금은 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주의 | 주소지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현주소지(전입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전주소지(전출지)에서 지급

2) 지급방법

- 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주민등록지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개별입금 조치하는 것이 원칙
- (예외①) 부부수급자가 일방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
- (예외②)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또는 채무불이행자
 - 치매, 거동불가 등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단, 수급자 또는 (예외②)의 계좌로 지급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예외②)의 계좌로 지급받을 자에게 직접 지급

3) 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에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 1) 특별자치도·시·군·구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지급기준

예시 | 서울특별시 A구에서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B시에 소재하는 경우

- ①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서울시 A구인 경우 : A구가 지급
- ② 시설 입소 당시 노인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B사인 경우 : B시가 지급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시설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특별자치도·시·군·구와 입소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기준



예시 | 경상북도 A시와 대전광역시 B구간 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시설입소 협약을 체결하여 A시 노인이 B시 시설에 입소하고, A시 노인이 주소지를 시설소재지 B로 변경하여도 A시에서 연금 지급 하기로 협약(MOU)체결

⇒ A시 노인이 B시로 주소지 변경 후 시설 입소한 경우 : A시에서 지급

※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수급자의 주소지 행정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방자치 단체 간 시설입소협약 (MOU)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주소지가 아닌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금지급 가능

6 미지급 연금

가. 지급사유 및 청구권자

1) 미지급 연금 지급사유

-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달까지는 사망자 계좌로 지급하여 상속 절차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 계좌가 해지되어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지급 연금 지급절차에 따라 처리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가 미지급 연금을 청구



-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
 -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 ※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인정범위는 계좌로 입금한 경우를 우선 인정하되, 직접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서 징구
 - ※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망일로부터 5년 후에 소멸됨

나. 청구절차 및 지급방법

1) 청구절차

- 미지급연금 지급 청구인은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를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국민연금공단이 청구 받은 때에는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우편송부)
- 청구시 구비서류
 - 미지급연금 지급청구서 [서식 제9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동순위의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임의서식) 징구
 - 청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2) 결정통지

- 미지급연금을 청구 또는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지급연금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3) 지급대상 및 방법

- 미지급 연금은 청구인 본인 명의 금융계좌에 결정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입금
 - 동순위의 청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 하여 오면 그 대표자에게 미지급연금을 지급
 - 청구권자가 지급순위와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연금을 지급 하지 아니함
 - 무연고 독거노인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3편
수급자
연금
지급
선정

7 수급권의 보호

- 수급권은 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이를 압류할 수 없음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 4 편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1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 기초노령연금법 제1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 주체 및 신청대상 처분

- 이의신청 주체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
- 신청대상 처분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처분(미해당 또는 감액 수급자 결정 처분, 지급(일시)정지 처분, 수급권상실 처분,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다. 이의신청 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³⁸⁾부터 90일 이내. 다만, 정당한 사유³⁹⁾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라. 이의신청 절차

1) 개요

-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접수

38) 통지서가 송달되어진 날로부터 기산

39) 장기입원, 해외 장기 출타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제12호] 및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
 -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 배우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3) 이의신청서 송부

-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이의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로 즉시 송부

4) 심사·처리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후, 심사 결과 보고서(임의서식)를 작성함

5) 결과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용⁴⁰⁾, 기각⁴¹⁾, 각하⁴²⁾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서식 제12호]
 - ※ 재산·소득 현황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함
 - 단, 청구인이 통지서 발송 전에 이의신청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자필로 신청 취하서(임의서식)를 작성토록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

마. 이의신청 인용의 효력

- **(급여신청 건)** 급여 신청월로 소급 적용. 단, 사전신청의 경우 지급월로 소급 적용
- **(급여신청 이외의 건)** 처분결정월로 소급 적용

40)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라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

41)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사유로 원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정

42) 심사청구의 형식요건을 결여한 심사청구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결정



바. 이의신청 처분에 불복 시

-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불복 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행정심판

가. 행정심판의 개요

1) 행정심판의 의의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자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에 대해 그 처분의 재심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재결을 행하는 행정쟁송절차
-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2) 행정심판기관

- 재결청
 - 처분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이 됨
- 행정심판위원회
 - 시·도지사가 재결청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인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

나.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 대상적격 - 처분이나 부작위(행정심판법 제3조)

-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이 법에 따른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제기

2) 청구인적격(행정심판법 제13조)

-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의 효력유무·존재여부,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취소심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무효등 확인심판)**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의무이행심판)**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3) 피청구인 적격(행정심판법 제17조)

- 행정심판은 당해 처분을 행한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피청구인(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 하여 청구
 - 다만, 심판 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함

4)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함

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법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6조, 제23조제1항)
-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28조)

라.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44조)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행정심판 제기요건의 흠결)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함
 - (취소심판청구의 인용)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 (무효등확인심판의 인용)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여부를 확인
 - (의무이행심판의 인용)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함
 - (사정재결)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나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주문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사정재결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음
-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재결에 대한 불복

-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수급자 관리

제 5 편



1. 수급자 사후관리
2. 부당이득환수
3. 부당수급자 관리
4.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1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자격 변동사항 처리 업무 흐름도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 제1단계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변동, 인적사항 변동, 연금액 변동, 수급권상실, 지급(일시)정지, 지급계좌변경 등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고 [공통서식 제1호, 제1호의2, 제11호] -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 • 처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e음」에 급여변경 신고내용 입력 및 관련 서류 스캔 후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신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통합조사관리팀 제2단계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된 급여변경 신청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신고사항 항목별 조사 및 조사결과 반영 ▶ 「행복e음」에서 변동대상자로 통보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자 결정’ 클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 급여액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수급자에게 확인 후 반영처리 •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사업팀 제3단계 수급 결정 및 결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격을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공통서식 제6호]

● 수급자의 본인신고, 공적자료의 정기갱신,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에 의하여 수급자격, 연금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 관리 필요

제5편 수급자 관리

가. 변동사항 관리

1) 개요

- 수급자의 신고,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수급자격, 급여액 변동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
-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는 「행복e음」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관련 서류는 별도보관

2) 확인대상

-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연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 수급자 소득·재산
 - 수급자 주소지 변경

3) 확인방법

- 본인신고 : 급여변경 신청, 연금수급권 상실신고
- 공적자료 :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변동사항 조회
- 확인조사 :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나. 수급자격 변동사항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본인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 신고사항

- 자격관리 사항
 - **(인적사항)**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사망,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금고이상의 형 집행, 해외체류, 행방불명, 실종
 - ※ 주소지 변경 사항은 별도 변경신고 없이 「행복e음」으로 처리
 - **(소득·재산사항)** 취업 및 실업, 사업개시 또는 휴·폐업, 각종 재산 매매
- 급여관리 사항
 - 지급계좌 변경



(2) 신고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국민연금공단이 급여 변경신고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등 관계서류 송부
-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공통서식 제1호], 소득·재산 신고서 [제1호의2] 각 1부
 -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사본(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기초노령연금관련 위임장 [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 배우자가 수급권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권한을 위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 불필요
 - ※ 사망에 따른 수급권상실 신고 시 위임장 불필요

(3)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인적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지급계좌 변경 : 신고일이 속한 달에 적용

(4) 처리결과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공통서식 제6호] (단, 변경된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 가능하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 명시)

2) 공적자료 갱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인적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사항 :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변동사항이 통보된 달)에 적용

3) 변동 유형별 처리방법

(1) 인적사항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변경사유

-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기존 연금액 지급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변경 연금액 지급

예시

- (사례1) 노인 단독가구로 각각 수급하는 2인이 결혼으로 노인 부부가구가 된 경우
 - 결혼관련 인적사항 변경은 「행복e음」에 발생한 달 적용시키나
 - 변경사항 발생한 달에는 각각 노인 단독가구 연금액을 지급하고,
 -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노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할 경우, 다음 달부터 노인 부부가구 2인수급 해당 연금액 지급
- (사례2) 2인수급 노인 부부가구가 이혼한 경우
 - 이혼관련 인적사항 변경은 「행복e음」에 발생한 달 적용시키나
 - 변경사항 발생한 달에는 노인부부가구 2인수급으로 연금액 지급하고,
 - 변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노인 단독가구 연금액 지급
- (사례3) 노인 단독가구일때는 각각 비수급자였던 2인이 노인 부부가구가 된 경우
 - 신규신청이므로 소득인정액이 노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에 부합할 경우, 신청월부터 노인 부부가구 2인수급 해당 연금액 지급



○ 처리절차

① 결혼·이혼(사실혼·이혼 포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를 확인하여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후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 변경·중지·상실 처리 후 결정 및 통지

② 주민등록번호 정정

-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인해 만65세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정정한 날이 속하는 달에 수급권 상실처리
- 정정 전 연금 지급결정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기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는 불필요

예시

□ 주민등록번호(연령) 상향 조정 시

- 2011년 1월 15일 연금신청, 2011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상향) 된 경우
【1937년 4월 1일 생(74세) → 1935년 4월 1일 생(76세)】
 ⇨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도 만65세 이상으로써 기(2011년 1월~) 연금 수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만 변경하고, 연금액 변경 등 별도 조치 불필요

□ 주민등록번호(연령) 하향 조정 시

- 2011년 1월 15일 연금신청, 2011년 8월 25일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하향) 된 경우
【1946년 3월 10일 생(65세) → 1948년 3월 10일 생(63세)】
 ⇨ 2011년 3월~8월까지 기 지급 된 연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지 않고, 수급권 상실 처리

주의 | 주소지 변경

□ 주소지 변경은 별도의 본인신고 없이 시스템으로 처리됨

- 전입 시 주택구입, 전·월세 계약변동, 공제금액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반드시 소득·재산 확인 후 수급권 상실처리 또는 연금액 변경 처리

전 출	전 입
- 전출처리 - 전입지로 관련서류 원본 우편송부 (*전출지에서는 사본보관) - 단, 부부2인 수급자중 한명만 전출할 경우 전입지로 관련서류 사본 송부 (원본 전출지 보관)	- 관련서류 확인 및 전월세계약서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처리

(2) 수급권 상실에 따른 업무처리

- 수급권상실 사유
 - 사망, 국적상실·국외(해외)이주, 선정기준액 초과
- 적용시점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선정기준액 초과자 제외)
- 처리절차
 - ① 사망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노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사망	수급자 사망일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수급 연금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권 상실처리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연금액 변경 결정 및 수급권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일	○ 급여 변경신고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 ※ 부부수급자 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 상실처리 후에는 소득·재산(금융, 기타, 증여)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일반재산(금융제외)만 수급자 재산에 반영되므로 별도의 변경 신고는 불필요
- ※ 사망한 배우자의 일반재산은 미등기 상속재산 처리 지침 적용



② 국적상실, 국외(해외)이주

구분	처리시점	처리절차
단독노인 또는 부부노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2인 수급 중 1인	수급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까지 2인 지급 ○ 주민등록말소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처리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연금액 변경 결정 또는 상실처리 결정 및 통지
부부가구 1인 수급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 말소일	○ 급여 변경신고 → 말소한 배우자의 일반재산(금융재산 제외) 산입 → 소득·재산·선정기준액 변경 적용 →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 확인 → 연금액 변경 결정 및 통지

③ 선정기준액 초과(소득·재산 변동)

- 초과사유 : 취업·사업개시, 신규재산 취득 등
- 적용시점 :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공적자료 갱신) 「행복e음」으로 변동사항이 확인된 달에 적용
- 지급기준 :
 - (본인신고)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 (공적자료 갱신) 변동사항이 확인(통보)된 달까지 연금 지급
- 처리절차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갱신에 의해 변동내용 확인
 - 소득·재산 변동에 따른 수급권 지속 여부 및 연금액 적정성을 확인한 후 급여 변경·정지·상실 결정 및 통지

(3) 연금의 지급(일시)정지에 따른 업무처리

 주의 **(공통사항) 연금의 지급·일시 정지**

- (반환) 재소자, 집행유예자, 해외체류180일 이상인자,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자 중 과잉지급한 연금이 있는 경우 반환토록 조치하되, 향후 지급할 연금에서 상계처리 가능
- (부부수급자) 부부수급자로서 일방의 배우자의 (일시)정지기간 동안은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액 지급
- (사유소멸) 연금 지급(일시)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급여 변경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 지급(일시)정지 사유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재소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자)
-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 정지기간

 주의 **정지기간**

- 지급(일시)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 재소자·집행유예자 : 형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소일(집행유예 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18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일이 속하는 달까지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실종신고 재판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실종신고 취소확정일이 속하는 달까지
- 가출·행방불명 신고자 : 가출(실종) 신고 후 1개월 경과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발견(복귀)일이 속하는 달까지

○ 지급기준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 연금 지급

○ 처리절차



① 재소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또는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수형(출소)증명서’를 발급 받아 ‘형 확정일’ 확인
 - ※ 수형증명서상 형의 종류가 ‘금고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 출소자 중 그 사유가 ‘형기만료’ 또는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 ‘집행정지’인 경우에는 형 집행 기간 만료일까지 지급정지
- ‘형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출소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 지급정지
- 사유 소멸일인 ‘출소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② 집행유예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 징구(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또는 필요시 담당자가 공문서로 관할 검찰청에서 발행하는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형 확정일’ 확인
 - ※ ‘형 확정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을 형 확정일로 함(형사소송법 제358조)
- ‘형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집행유예 종료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 지급정지
- 사유 소멸일인 ‘집행유예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급여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득·재산 확인 후 연금지급 결정

주의 **신원조회 회보서상의 ‘해당사항 없음’의 의미**

- 신원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된 것은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행유예 기간 경과 또는 사면·복권된 경우 기록을 삭제하게 되어 있기에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또는 사면·복권장을 징구하여 지급정지 여부 확인·처리
 -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 선고일, 확정일 확인하여 집행유예종료 확인
 - 사면·복권장 : 집행유예 면제일 확인
- ※ 사면·복권의 효과(사면법 제5조)
 1. 일반사면은 형의 언도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의 언도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2.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3. 복권은 형의 언도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③ 해외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자

- 본인 신고 또는 공적자료 확인 후 관계인(부양의무자 등)에게 증빙서류(여권, 비행기 티켓 등) 징구 또는 필요시 G4C(행정정보공동이용)를 통해 출입국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열람(발급) 후 사실 확인

※ 해외체류 기간은 연간 합산이 아니라 연속 180일을 의미함

※ 180일 산정의 기산일은 출국일 그 다음날. 단, 해외체류 중(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금 신청일부터 기산

예시 |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처리

□ 홍길순(1945년 10월 4일생)은 2010년 10월 25일자로 연금을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 15일 수급자로 결정됨

- (사례1) 2011년 1월1일 출국, 2011년 8월 5일 「행복e음」에 출국자로 통보됨
 - 출국일 다음날인 2011년 1월 2일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되는 6월 30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7월부터 연금지급 일시정지
(기 지급된 7월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
- (사례2) 연금 신청 전인 2010년 9월 7일 출국하여 2011년 5월 7일 입국함
 - 연금 신청일인 2010년 10월 25일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되는 2011년 4월 22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5월에 일시정지 한 후,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6월부터 급여 재개
- (사례3) 2011년 3월 1일 출국하여, 2011년 8월 30일 입국함
 - 출국일 다음날인 2011년 3월 2일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되는 날은 같은 해 8월 28일로, 해외체류 180일이 속한 달과 입국일이 속한 달이 같으므로 일시정지 기간없이 계속 연금 지급

④ 실종 또는 가출·행방불명

- 본인 신고 또는 관할 법원·경찰서 협조를 통해 분기별로 실종 등 행방불명자 확인
 - 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징구
 - * (법원)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 실종부재 선고취소 신고증
(경찰서) 신고접수증, 가출인 수배부, 182경찰정보통신망 수정·해제자료 등
 - 경찰청 실종아동등찾기센터(www.182.go.kr),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www.elder119.or.kr)를 보조적으로 활용



- 주민등록말소(법원의 실종선고,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말소 신고)는 「행복e음」을 통해 개인정보 변동자료로 시·군·구에 송신되므로 관계 기관에 별도 확인 요청 없이 처리 가능

주의 수급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 수급자 본인이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

- 거주불명등록이 된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연금 지급 정지
→ 본인의 직접 방문재신청 → 재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

□ 부부 2인 수급 가구에서 수급자 본인의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자가 된 경우

- 거주불명등록이 된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연금은 부부가구 1인수급 처리
- 거주불명등록이 된 배우자가 연금을 재신청한 경우(방문 필수)
→ 신청한 달이 속한 달부터 부부가구 2인수급으로 처리

다.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아 정기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한 대상자 및 분야를 선정하고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건전성 유지

(1) 확인조사 대상

- 「행복e음」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아 정기확인이 필요하거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수급자(중점관리 대상)

예시 | 중점관리 대상 및 분야

-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입금 수급자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인 수급자
- 사실상 혼인(이혼)관계에 있는 수급자(만65세 미만 배우자 포함)
- 의사무능력자인 수급자
-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
- 보건복지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2) 조사수행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의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분야·대상·시기·방법 등을 포함하여 시·군·구별 연간조사계획 수립·시행

(3) 조사결과의 처리

- 수급자격, 연금액 등을 변경하고, 부당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절차 수행
- 적용시점
 - 인적사항 :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에 적용
 - 소득·재산 사항 : 확인조사일이 속한 달에 적용



2 부당이득 환수

부당이득 환수 처리 업무 흐름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제1단계 부당이득확인 및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기타 관계인의 부당이득관계 확인 • 부당이득 내용확인·결정
↓	
제2단계 납부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통지 • 향후 지급할 연금이 있는 경우 환수금과 상계처리 • 납부기한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상
↓	
제3단계 납부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내에 부당이득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독촉 • 미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제4단계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수대상자의 재산·소득 등에 처분 금지 조치 실행
↓	
제5단계 경매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	
제6단계 징수금액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 급여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제7단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가. 부당이득 환수의 개요

1) 부당이득의 범위

- 수급자의 허위·지연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지급되어야 할 연금보다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었거나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연금 전액

2) 부당이득의 확인 및 결정기관

- 부당이득의 확인은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함

3)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 부당이득이 확인된 경우 사유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수급권상실처리 또는 정지(일시정지)하고 부당이득환수 결정처리
- 부당이득이 확인되었으나, 수급자격은 유지되고 연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등을 확인하여 연금액 변경 및 부당이득 환수 결정

나. 부당이득 환수 결정

1) 부당이득 환수대상자 결정기준

(1) 부당이득 환수 대상

- 수급권이 없음에도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망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선정기준액 초과자, 해외체류 180일 이상자, 재소자, 집행유예자, 실종자 또는 가출·행방불명자 등
 - 수급권이 있어도 과다하게 지급받은 경우
 - 전·출입지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중복 지급한 자
 - 단독수급에서 부부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과지급한 자
 - 기타 담당자 착오 등 과다하게 지급한 자
- ※ 수급자를 대리하여 배우자(또는 부양의무자 등)가 신청하여 수급중인 경우 연금을 수급한 당사자에게 환수



(2)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 결정 시점

○ 본인신고

- 인적사항, 소득·재산의 변경에 따른 각종 신고 처리과정에서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당이득 환수 결정 등 부당이득 환수절차 이행

○ 공적자료 갱신

- 인적사항, 소득·재산의 변경자료 제공에 따른 처리과정에서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변동자료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당이득 환수 결정 등 부당이득 환수절차 이행

○ 확인조사

-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한 확인조사 과정에서 부당이득 환수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조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당이득 환수 결정 등 부당이득 환수절차 이행

2)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산정

(1) 환수금액

- 환수금액은 특별자치도·시·군·구가 지급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 환수금액 총액의 1천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며, 이자 가산은 없음
- 부당이득 환수 시 유의사항
 -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속될 연금과의 상계처리 가능
 - 부부수급자 중 한명만 부당이득 환수금액이 발생한 경우 배우자의 연금액에서 상계처리 가능

예시 | 환수금액 산정

- 노인부부(A, B)의 부당이득금 지급 기간 : 2010년 1월 ~ 3월(3개월)
- 총 지급액 : 422,400원(140,800원 × 3개월), 각 211,200원
 - 노인부부에게 각각 환수해야 할 금액은?
 - ⇒ 2010년 1월~3월까지 각각 지급한 연금액 211,200원 중 211,000원 환수
 - ※ 1천원 미만의 단수 제외 적용 필

(2) 환수대상자 관리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대상자를 반드시 「행복e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다. 부당이득금 징수절차

1) 납부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이득환수 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부당이득환수 원인 및 내용, 환수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안내 및 의견미제출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처분 통지서를 작성하여 대상자에게 통보
- 사전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부당이득환수 결정 및 등록
- 부당이득환수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통지하고, 납부일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 [공통서식 제11호]
 - 환수대상자가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연금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지급된 연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 다만, 실제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납부의무자가 됨

2) 분할납부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당이득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토록 할 수 있음

3) 독촉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압류, 경매처분 등)를 진행함

4)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년도 급여분은 당해년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하고, 과년도 급여분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라. 결손처분

1) 결손처분 대상

- 부당이득 중 장기체납 부당이득금

2) 결손처분 기준

-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의 권리 또는 채무의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
 -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부당이득금
- 소멸시효 완성전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된 건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채납처분비에 상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 채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산의 멸실 등으로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환수대상자가 재산 없이 사망하고, 법정상속인 모두 상속포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환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납부의무자를 변경하여 상속인에게 납부 통지해야 함에 유의

3) 결손처분 방법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채납된 부당이득금의 채권이 결손처분 기준에 해당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손처분
-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 심사 후 7일 이내에 「행복e음」에 반드시 심사결과를 입력·관리해야 함

마. 소멸시효

- 부당이득을 환수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소멸시효 기산일은 지급되지 않아야 할 연금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3 부당수급자 관리

- 수급자의 변경사항 미신고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을 갖게 된 경우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여 기초노령연금 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함

가.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 업무 흐름도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행

단 계	업 무 처 리 내 용
제1단계 위반행위 여부 확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 위반행위 조사·확인 결정
제2단계 과태료부과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 명시 통지 •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지정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시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p>※ 이의신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처분에 불복 시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제기 가능 2)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사실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제3단계 압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대상자의 재산·소득 등에 처분 금지 조치 실행
제4단계 경매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강제 환가
제5단계 징수금액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년도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 과년도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제6단계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

1) 위반행위 확인

-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2) 과태료 부과 결정

(1) 위반행위별 과태료 징수금액 결정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진술	200,000원
- 상실사유에 따른 미신고	100,000원

※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통지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내용,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과태료부과 원인 및 내용,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 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 시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전통지서를 작성 대상자에게 통보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에게 처분통지를 하였음에도 제출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거나, 의견진술 내용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해 과태료 부과

(3)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당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4) 과태료 징수절차

-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명시



나. 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6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
-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누설 또는 신용·보험 정보를 누설할 경우 행위자 및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항의 벌금을 부과함

제5편
수급자
관리

4 수급자 현황의 관리 및 보고

- 수급자, 급여,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행복e음」을 활용하여 기록관리·보고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등의 현황을 「행복e음」을 통해 기록·관리하며, 확인 불가능한 자료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행복e음」에 입력 후 개인별 카드에 보관관리
- 기록관리 대상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공통서식 제8호(갑-1을-3)]⁴³⁾
 - 연금수급자 관리대장 [서식 제8호]⁴⁴⁾
 - 급여지급실적

2) 수급자의 현황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사항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일일보고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연금수급자 관리대장
 - 매월보고 : 급여지급실적
- 보고방법은 「행복e음」을 통해 보고

43) 연금수급자 관리카드 : 수급자별 소득 및 재산 상황과 수급내역을 기록한 관리카드

44) 관리대장 : 관할 읍·면·동의 수급자 현황을 기재한 문서로써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제 6 편



1. 일반규정
2.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3.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1 일반 규정

가.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기초노령연금법 등

나. 정보보호 주체

-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종사자

다. 보호대상 정보

- 개인정보 :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

<예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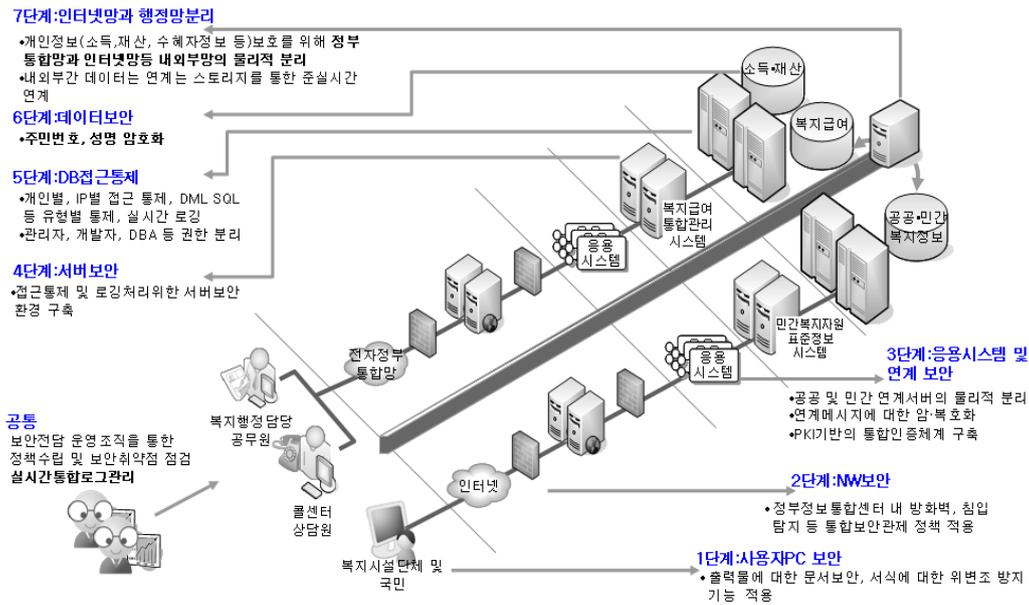
- 생활·가족 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
- 심신 상태 : 건강상태, 질병, 장애, 병력, 신체적 특징 등
- 사회·경제관계 : 학력, 직업, 소득, 재산 등

라. 개인정보 위협 요인

- 공공기관 내부 요인 :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조회·훼손하거나, 조회된 정보를 법령에 의한 사업목적 외로 사용 또는 외부 유출
- 공공기관 외부 요인 : 외부인이 정보시스템에 침입하여 개인 정보 조회·훼손, 유출

2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정책

가. 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 인터넷망과 행정망 분리

- 「행복e음」은 행정망 내부에 위치하고 외부 인터넷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행정망 외부의 정보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

○ 데이터 보안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고 접근이 허용된 사용자라도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 외부 연계기관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경우 행정전자서명표준보안 API를 이용하여 암호화
- 업무담당자의 온라인 처리 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 및 주요데이터 암호화



- DB 접근통제
 -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 접근, 의도적 변경과 파괴로부터 데이터 혹은 DB를 보호하기 위한 DB 보안툴 적용
 - 개인실명을 바탕으로 한 공인인증 방식의 접속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 접속 정보, 이용정보 등을 관리하고 사용권한 이외자의 접근 차단
- 서버 보안
 - 「행복e음」서버들에 대한 보안운영체제(Secure OS)를 적용하여 프로세스 제어, 내부자료 유출방지, 감사 및 추적 기능 등 서버 보안을 강화
 - 중앙관리서버를 통한 서버 보안 정책의 일괄 통제, 원격관리, 통합관리 체계 구현
 - 시스템 차원의 물리적 보안성 강화를 통한 서버 침해 사고 사전 대응
- 응용시스템 및 연계 보안
 - 공공 및 민간기관 연계서버의 물리적 분리
 - 시스템간 연계시 또는 업무담당자의 온라인 처리시 송수신되는 개인정보 및 주요 송수신 데이터의 암호화
- 네트워크 보안
 - 서버를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에 설치하고,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DB Zone 방화벽 등을 통한 접근 통제
- 사용자 PC 보안
 - 키보드 해킹방지 툴과 개인방화벽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 툴 및 시스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
 - 온라인상의 문서 및 프린트 출력을 제어하고, 전자화된 문서 및 서류 등의 위변조 차단, 위·변조 방지 및 검출을 위한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시스템 적용

나. 관리적 보안 정책

-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 보유자료에 대해 업무별, 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기관별, 사용자별 접근권한을 한정

- 단말기 취급자의 자료접근 범위는 주전산기에 등록하여 인가자 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 통제
- 시스템 사용 기록 관리 및 자체 모니터링
 - 「행복e음」 접속 시 접속한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
 - 서버에 접속한 일시, 접속자 및 접속방법 등 「행복e음」 접근 기록
 - 전산자료 열람·출력 등에 대한 사용자, 사용일시, 자료제목 등의 전산자료 접근 기록
 - 시스템에 접근한 자료(자동으로 기록된 접속 내용) 관리
 - 접근자료 관리는 접속의 성공여부와 무관하게 기록유지
 - 시스템 접근 기록은 매일 점검하고 분석내용을 수시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 3회 이상 접속시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경고발생 및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보
-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내 상시 감시체계 구축
 - 제3자적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의한 내부유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 법·제도적 정책

- 고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제3항)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을 신청하거나
 -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이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을 때
 - 보호대상자에게 법에 의한 조사를 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법적근거, 이용목적 및 범위, 이용방법,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등을 고지
- 개인정보의 파기(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
 - 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보안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의2)
 -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 각 기관별로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
- 보장목적 외 사용금지 및 벌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
 - 법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금융정보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행복e음」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금융자산조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제7조의2제6항)
 -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가. 배경

- 「행복e음」은 물리적·기술적 보안정책 및 관리적 보안 정책을 마련하여 정보 보안성을 높이고, 외부 침입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안 방안을 마련
-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은 해킹과 같은 외부침입보다는 업무담당자에 의한 의도적 유출사고*가 지배적임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책 필요
 - ※ 미국CSI/FBI 보고서('02)에 따르면 외부 해커에 의한 유출사고는 20%인 반면, 고의적 유출사고가 80%나 됨

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별 개인정보 열람 내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개인 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해 적의 조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개인정보 열람내역(로그기록)을 분석하여 업무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

다. 모니터링 대상 및 방법

- 모니터링 대상
 - 복지대상자의 신청 등 업무 목적 외에 임의로 열람하거나, 동일 신청인에 대하여 여러 업무담당자가 과다하게 열람하는 등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 모니터링 방법
 - 「행복e음」 접속 시 자동으로 기록된 열람내역을 분석하여 문제 사례 추출
 - ※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 사례는 정교화
- 모니터링 시기
 -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문제 사례 발견 시 즉각 조치



라. 모니터링 후속 조치

-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정보 열람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하여 시·군·구 자체 조사 실시 및 열람 내역 관련 사유서 징구
- 시·군·구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차원의 점검 및 결과 조치 통보
 -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고, 중대 사안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에게 조치토록하고 필요시 감사 요청



서 식 제 7 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신규(제공)신청 <input type="checkbox"/> 변경신청 <input type="checkbox"/> 연장신청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¹⁾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사실상 이혼)										
부양의무자 ²⁾	수급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구 원수	소득	재산	월평균 지원금 ³⁾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신청인의 범위										
안 내	공통	본인, 친족 ⁴⁾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타 관계인	기초생활 보장 기초노령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							
		영유아보육 · 유아학비	후견인,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 1) 해당자에 한함
-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3 면]

유의사항

1. 처리기한은 보장구분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14일, 한부모가족 15일, 영유아보육·유아학비 30~60일, 기초노령연금 30~60일, 장애인연금 30~6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이내
-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2.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①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②결혼 또는 이혼, 배우자의 사망, ③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근로능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가 변경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때 **지급이 중지되고**,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와 「장애인연금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또는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12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기초노령연금법」 제22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23조,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 제23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7.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부동의)
8.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적용 할 수 있습니다.
9. **본인은 이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0. **본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접수(대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_____ (대리신청의 경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편
서
식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원	원	원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원	원
		연금소득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원	원
	기타 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기 타 (지자체 지원금 등)	원	원		
재 산 사 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토 지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선 박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입목재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항공기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어업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동 산	<input type="checkbox"/> 소(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돼지 (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가축(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종묘(마리, 원) <input type="checkbox"/> 기계·기구류(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분양권	원	조합원 입주권	원	회원권	전국분 자산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	원	원		
	임대보증금	원							
	공중사채	<input type="checkbox"/>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 (원) <input type="checkbox"/>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가구특성 지출요인 ³⁾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input type="checkbox"/>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input type="checkbox"/>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해보조금 (원) <input type="checkbox"/>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가구특성지출요인: 실제 소득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요인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1.1.1>

[앞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 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²⁾ (서명 또는 인)
		-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증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4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획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input type="checkbox"/> 결정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조사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신청결과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보호대상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월 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안내 및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와 같이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 <input type="checkbox"/> 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자립,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1. 귀하는 위와 같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입금금액</td> <td style="width: 30%;">본인</td> <td style="width: 40%;"></td> </tr> <tr> <td>계좌번호</td> <td>배우자</td> <td></td> </tr> </table>				입금금액	본인		계좌번호	배우자	
	입금금액	본인									
계좌번호	배우자										
	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18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0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 보장 <input type="checkbox"/> 영유아보육·유아학비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자립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면]

조사심의 결과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p><input type="checkbox"/> 특별지원청소년</p> <p>1. 귀하는 위와 같이 특별지원청소년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15%;">보호자</td>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15%;">관계</td> <td style="width: 15%;">생년월일</td> </tr> <tr> <td>주소</td> <td></td> <td>연락처</td> </tr> <tr> <td rowspan="2">지원기관</td> <td>기관명</td> <td></td> <td>대표자</td> </tr> <tr> <td>주소</td> <td></td> <td>담당자</td> </tr> <tr> <td></td> <td></td> <td></td> <td>연락처</td> </tr> </table> <p>지원내용</p> <p>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소년소녀가정보호비/그룹홈·가정위탁보호비/기타</p> <p>1. 귀하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보호자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원기관	기관명		대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노인복지	<p><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p> <p>1. 귀하는 위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지급예정 연금액 및 입금금액 계좌번호(본인 및 배우자)는 아래와 같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지급예정 연금액</td> </tr> <tr> <td style="width: 15%;">입금금액계좌번호</td> <td>본인</td> </tr> <tr> <td></td> <td>배우자</td> </tr> </table> <p>3. 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사전신청의 경우 65세가 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4.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급권 상실: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 재산의 증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변경: 연금지급액의 변경을 초래하는 소득과 재산의 변동, 결혼·이혼 및 배우자의 사망, 지급계좌 변경, 연금지급 정지사유 소멸 - 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지속된 경우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금은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기 타</p> <p>1. 귀하는 위와 같이 노인복지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또는 서비스는 환수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지급예정 연금액																				
입금금액계좌번호	본인																			
	배우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조사심의결과	<input type="checkbox"/> 적합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1. 귀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금	금액	원	제공기관
	본인부담금납부계좌 : _____				
	3.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아래의 사업별로 납부기간 내에 입금해야만 익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일 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 (1차 납부 기한) 매월 15일~27일, (2차 납부 기한) 익월 1일~10일까지. 이 경우 납부 익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 카드 수령봉투에 인쇄된 납부계좌 또는 위 본인부담금 부분에 인쇄된 납부계좌로 서비스 이용 2일전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이외의 사업은 제공기관에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서비스 실시기간 중 서비스 신청자격과 관련한 변동사유 발생 시 즉시 시·군·구(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또는 제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유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받은 서비스는 환수 되고,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의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사회복지서비스·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사회복지서비스·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정지·중지·상실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input type="checkbox"/>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18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중 지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input type="checkbox"/> 해외체류기간 90일 이상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input type="checkbox"/>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 실		일 자	년 월 일 부터	내용	
사 유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국적상실 <input type="checkbox"/> 국외이주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input type="checkbox"/> 장애등급의 변경으로 중증장애인 미해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별지 제8호서식] (갑-1) <개정 2011.1.1>

년도/분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세대주	
세대주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변동사항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동일자	변동사유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입일자	전입일자		
가구원 사항													
구분	세대주와 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구원별 보장구분	가구원별 지원급여	복지급여계좌 (금융기관명)	개인별소득		소득합계		재산		
	본인						전가구원 소득액	소득공제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1인당평균 소득평가액	건축물 토지	장기저축 생활준비금	재산총액
보장 가구							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	전가구원 소득평가액	자동차	공제	추가기초공제	공제총액
										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부채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기 관 대출금	기초공제액
										금융재산 동산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소득환산액
										회원권등	공중사채	공중사채	소득인정액
보장구분사항													
내 용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차활지원, 부양인)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아동·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기초노령연금)		
	보장 기간	계시일 종지일	정지일 상실일	보장유형(등급)	보장구원수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제7편 서식



(갑-2)

관리번호	세대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작성일자:)		
기초생활 보장사유	연소(18세미만) <input type="checkbox"/> 연로(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질병(병명:)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등급:) <input type="checkbox"/> 임신 <input type="checkbox"/> 실직·미취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실패 <input type="checkbox"/> 저임금·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양육·간병·보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학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양의무자 유무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없음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명), 부양능력 미약(명), 부양능력 있음(명)	
부양능력 판정사유	<input type="checkbox"/> 부양받을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군복무 <input type="checkbox"/> 해외이주 <input type="checkbox"/> 복역 <input type="checkbox"/> 보장시설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가출·실종사유 <input type="checkbox"/> 부양기피·거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특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특례유형() <input type="checkbox"/> 특례수급자(가구전체, 가구원 일부)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일시() <input type="checkbox"/> 특례급여 종류()	
근로능력 판정	판정사유	
긴급급여	<input type="checkbox"/> 급여액() <input type="checkbox"/> 급여일시() <input type="checkbox"/> 급여사유()	
생계급여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수 ()	
주거급여	<input type="checkbox"/> 월세임차료 <input type="checkbox"/> 유지수선비(현금급여, 점검수선)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대여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원비 <input type="checkbox"/> 주거급여 제외	
교육급여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학 교 명 학 년 반	성 명 학 교 명 학 년 반
해산급여	<input type="checkbox"/> 해산자 () <input type="checkbox"/> 해산일자 ()	장 계 급 여 <input type="checkbox"/> 사망자() <input type="checkbox"/> 사망일자()
각 종 감면제도	부 지 진 화 <input type="checkbox"/> 설치 <input type="checkbox"/> 미설치(사유:)	시청료감면고객번호
	상하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갑-5)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한부모 가족사유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사망	<input type="checkbox"/> 배우자가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유기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생사불명	<input type="checkbox"/> 배우자해외장기체류	<input type="checkbox"/> 청소년한부모(25세 미만) (해당되는 경우 체크)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기복역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절벽으로 인한 근로능력상실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미혼부	<input type="checkbox"/> 조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학버지원	성명	학교명	학년반	성명	학교명	학년반			
아동양육비 지원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성명	지원기간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구분	시설명	소제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가구별 자산 형성계좌지원	성명	계좌명	계좌개설일	계좌(찾는 날짜)	성명	1차	2차	3차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의료비부담액	성명	1차	2차	3차	4차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지립촉진수당	성명	1차	2차	3차	성명	1차	2차	3차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연월일 금액

297mm×210mm(인반용지 60g/㎡(제활용품))

(을-1)

관리번호	세대주			
장애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성명	<input type="checkbox"/> 보장구지원()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학비 <input type="checkbox"/> 자급대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서비스			
장애 등급 사항	종합장애등급	심사완료여부	최초장애등록일	중복장애유무
	주 장 애			
	진단이력	유형	등급	심사완료여부
	결정일자	장애관정기관	진단이력	유형
장애사유	주 장 애	<input type="checkbox"/> 선천성 () <input type="checkbox"/> 후천성 ()	발생연령	부 장 애
	보장구	종류	교부일자	특수교육
	취업알선	직종	기관	직종
	학비	대상자	학교명	의료급여종별
육 지 원	장애수당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지급개시일자	대상자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시설명	소제지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자동차 표지	보행상 장애 유무	발급일	차종	차량번호
	배기량	배기량	배기량	배기량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
	반납일자	반납일자	반납일자	반납 일자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3)

관리번호	노인복지 대상자						세대주	
관리번호		관상자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작성일자 :)						
구분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검진 일자	조치 의견	검진의료기관	검진결과(정상여부 등)		
1차 검진								
2차 검진								
취업알선	대상자 성명	희망직종	취업일자	취업기관	비고			
시설입소 (이용)	대상자 성명	시설구분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이용)일자	입소(이용)기간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을-4)

기초노령연금 복지 대상자

대상자										
(작성일자: 작성자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 현재정보					
본인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관 리 행정동	성명	주민등록 번호	관 리 행정동	관 리 행정동	부부가구	1인수급	지급액	
신청일	최 초 지급일	소득인정 액	신청일	최 초 지급일	최 초연금액	소득 인정액	최 초연금액	2인수급		
							단독가구			
변 동 이 려										
본 인					배우자					
변동일자	변동내역 (사 유)	소득인정액	연금액	비 고	변동일자	변동내역 (사 유)	소득인정액	연금액	비 고	
부당이득발생 환수 내역										
환수 대상자	부당이득 발생일자	부당이득 발생일자	환수결정일자	환수금액	환수완료일자	환수완료일자	처리상태 (완료/분납/상계/미처리)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을-5)

관리번호		세대주	
부랑인·노숙인 복지 대상자			
(작성일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랑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욕구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 <input type="checkbox"/> 취업알선 <input type="checkbox"/> 직업훈련 <input type="checkbox"/> 기초노령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연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 <input type="checkbox"/> 기타()	성명
시설입소	대상자	시설명	성명
		소제지	주소일자
			입소기간
후원·자원봉사 내용			
후원자		후원내용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후원종류 및 후원내용 현금 물품	소년소녀 가장 월후원액 후원금관리자 관 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내용	
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자원봉사 기간	자원봉사 대상자
		자원봉사 방법 (방문요일/시간)	비 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2)

상 담 내 용

		구분	성 명	주 요 변 동 사 항								
3차 상담		보 강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계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명	상담자	각명	상담자	각명	상담자
4차 상담		보 강 대상자										
		부 양 의무자										
		소 득										
		계 산										
		상 담 일 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명	상담자	각명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일반용지 60g/㎡(제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1.1>

보장비용 · 부당이득 징수 통지서 (○차)				
수 급 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거 주 지 (소 재 지)			
비 용 (부당이득) 납 부 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수급자·보호대상 자와의 관 계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부양의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조치의 내 용				
납부(환수) 사 유				
납 부 액	원	납부장소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 첨	
<p>『사회복지사업법』제4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6조, 『아동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제51조, 『기초노령연금법』제12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7조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p>				
안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생활보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2) 영유아보육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3) 한부모가족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4) 장애인복지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5) 기초노령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6) 노인돌봄비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7)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건소장을 거쳐 시, 도지사에게 신청 8) 장애인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9)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제 호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input type="checkbox"/>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 월부터 · 월까지(월간)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지급대상자가 한정자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 리 수령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수 령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제 호				기초노령연금 대리수령 승인서		
지 급 대상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청 사유		대리수령 지정기간	· 월부터 (월간) · 월까지		
대 리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관계	의	
	주소					
위와 같이 대리수령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신청</div>	승인여부 통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확인</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0 auto; text-align: center;">결재</div>
※ 유의사항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기초노령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일		년 월 일				
처분 내용						
이의신청 내용		<input type="checkbox"/> 연금 지급결정 변경(미해당 → 해당) <input type="checkbox"/> 연금액 변경 <input type="checkbox"/> 기 타				
이의신청 결정 결과		<input type="checkbox"/> 처분 취소·변경 <input type="checkbox"/> 기각 <input type="checkbox"/>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input type="checkbox"/> 귀하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 : (소속) (성명)</p> <p style="text-align: center;">문의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인)</p>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011년 기초노령연금 사업 안내

인쇄일 : 2011년 1월 일
발행일 : 2011년 1월 일
발행처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
(전화) (02) 2023-8367~8369
8371, 8374~8379
8381, 8382, 8386
(팩스) (02) 2023-8380
인쇄처 : (주) 이문기업
(전화) (02) 3672-0129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w.go.kr/>